

소득파악 제도의 행정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2025. 9.

최인혁·권정교·문교현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인혁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권정교 세무사

문교현 세무사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배경 | 1 |
| 2. 연구 목적 및 차별성 | 2 |
| 3. 연구 범위 및 구성 | 3 |
| II. 소득 지급 관련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현황 | 4 |
| 1. 신고의무 | 4 |
| 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5 |
| 나. 지방세법 | 12 |
| 다. 사회보험법 | 16 |
| 라. 근로기준법 | 20 |
| 2. 신고의무 체계 비교 | 23 |
| 가. 개별 법에 따른 신고의무 비교 | 24 |
| 나. 신고정보의 연계 및 공유 현황 | 31 |
| 3.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 37 |
| 가. 행정시스템 현황 | 37 |
| 나. 행정시스템 비교 | 52 |
| III. 해외 주요국의 사례 | 55 |
| 1.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비교 | 55 |
| 가. 영국(PAYE) | 55 |

| | |
|-----------------------------------|-----|
| 나. 일본(API) | 67 |
| 다. 비교 | 76 |
| 2. 과세정보 공유 사례 | 82 |
| 가. 미국 | 82 |
| 나. 스웨덴 | 88 |
| IV. 개선방안 | 92 |
| 1. 과세정보 연계 및 공유 | 92 |
| 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신고의무 | 92 |
| 나. 소득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97 |
| 2. 행정시스템 개선 | 99 |
| 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시스템 통합 | 99 |
| 나. 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 | 102 |
| 3.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절차 | 103 |
| 가. 과세정보의 정의 및 공유 절차 | 103 |
| 나. 법령 정비의 필요성 | 108 |
| 4. 소결 | 110 |
| V. 결론 | 112 |
| 참고문헌 | 114 |

표 목차

| | |
|---|----|
| 〈표 II-1〉 원천징수 대상 소득(소득세 또는 법인세) | 6 |
| 〈표 II-2〉 원천징수 신고기한 | 6 |
| 〈표 II-3〉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7 |
| 〈표 II-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 8 |
| 〈표 II-5〉 실시간 소득과약 수단 및 제출주기 | 9 |
| 〈표 II-6〉 인적용역제공자 소득과약 수단 | 10 |
| 〈표 II-7〉 연간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 11 |
| 〈표 II-8〉 원천징수 대상 소득(지방소득세) | 13 |
| 〈표 II-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 13 |
| 〈표 II-10〉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 16 |
| 〈표 II-11〉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 | 22 |
| 〈표 II-12〉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과태료 | 23 |
| 〈표 II-13〉 소득 지급 관련 원천징수의무자의 국세 등 신고의무 | 29 |
| 〈표 II-14〉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과약 자료 타 부처 제공 현황 | 36 |
| 〈표 II-15〉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의 종류 | 42 |
| 〈표 II-16〉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의 종류 | 42 |
| 〈표 II-17〉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 45 |
| 〈표 II-18〉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 47 |
| 〈표 II-19〉 4대 사회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 48 |
| 〈표 II-20〉 국세 등 소득지급 관련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비교 | 54 |
| 〈표 III-1〉 영국의 세금 코드 | 62 |
| 〈표 III-2〉 일본의 원천징수 및 연말조정 사무 | 69 |
| 〈표 III-3〉 우리나라와 영국의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비교 | 80 |

| | |
|---|-----|
| 〈표 III-4〉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시스템 비교 | 82 |
| 〈표 III-5〉 미국의 내국세입법 제6103조 | 84 |
| 〈표 III-6〉 스웨덴의 행정자료 생성 및 관리 흐름도 | 91 |
| 〈표 IV-1〉 소득종류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정보 | 93 |
| 〈표 IV-2〉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 104 |
| 〈표 IV-3〉 소득금액을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 | 107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전자신고(직접 신고서 작성) | 39 |
| [그림 II-2]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전자신고(전자파일 변환) | 40 |
| [그림 II-3]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 44 |
| [그림 II-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내용 | 46 |
| [그림 II-5] 고용24의 전자근로계약서 | 49 |
| [그림 II-6]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50 |
| [그림 II-7]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 51 |
| | |
| [그림 III-1] 영국의 개인 세금 계정(PTA) 메뉴 | 64 |
| [그림 III-2] 영국의 HMRC와 DWP 간 소득정보 공유 | 66 |
| [그림 III-3] 일본의 연말조정 일정 | 69 |
| [그림 III-4] 일본의 마이너포털 API 구조 | 74 |
| [그림 III-5] 일본의 마이너포털과의 연결 구조 | 75 |
| [그림 III-6] 미국의 GAO 검토매뉴얼 | 87 |
| [그림 III-7] 스웨덴의 조세정보 공유사이트 | 90 |
| | |
| [그림 IV-1]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 전·후 비교 | 93 |

I. 서론

1. 연구 배경

- 적시적 소득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의 신설 등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강화되고 있음
 -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소득은 확대되고 제출기한은 단축되고 있음
 - 2026년 1월 1일부터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반기→월)될 예정임¹⁾

-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협력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기관별 수집한 소득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한 체계는 아직 미흡한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 등의 신고제도가 제도별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소득정보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공단 등 관계기관별로 제출해야 함
 - 특히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수집하는 소득정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자료로, 국세청 외에도 다수의 기관에서 필요로 하며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임

-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선도국인 영국은 'PAYE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우

1) 단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2026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리나라와 소득과약 제도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과세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마이네 포털 API’를 운영하고 있음

2. 연구 목적 및 차별성

- 본 연구는 제도별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현황 검토 후, 제도별로 수집된 소득정보의 연계·공유를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산발적으로 수집되는 소득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 선행 연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협력 부담 완화 방안 또는 제도별 쟁점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데이터 공유 및 연계, 행정시스템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편
 - (조세 분야) 조세를 중심으로 통합을 가정한 연구가 다수임
 - 「조세-사회보험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2023): 조세의 신고서식 일원화, 사회보험의 총액신고 면제 등 제도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한 통합 방안을 제시함
 - 「조세-사회보험 사무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2022): 임금정보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동 모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공통 신고서식을 제시함
 -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2020):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사회보험 분야)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보험 각 제도의 쟁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도입 관련 국민연금의 쟁점 및 과제」(2024): 국민연금의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구축 관련 쟁점 및 과제를 분석함

- 「국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논의와 향후 과제」(2022):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
- 「조세 및 사회보험 징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2021):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3. 연구 범위 및 구성

- 제도 간 완전한 통합을 고려하는 것은 장기 과제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행정당국 간 소득정보 공유를 위해 시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다루는 행정시스템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기존의 선행 연구를 검토
 - 제II장에서는 소득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 의무와 이러한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현황을 살펴봄
 - 2025년 7월 현재 소득과약을 위한 다양한 신고의무 및 관련 행정시스템을 파악·정리
 - 제III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영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사례를 상세히 검토
 - 제IV장에서는 소득과약 제도의 행정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
 - 신고의무 통합 및 과세정보 공유, 납세코드 등 일원화, 정부 인증 소프트웨어 관리, 지방자치단체 세입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위한 통합형 플랫폼 개발, 법령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의
 - 제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정책 시사점을 제시

II. 소득 지급 관련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현황

1. 신고의무

- 원천징수의무자²⁾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천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월별로 신고해야 함
 -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음
 - 지급명세서는 '연간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로 구분할 수 있음
 - 국세청은 2018년까지 지급명세서 제도(이하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간 단위 소득자료를 수집해 오³⁾
 - 2019년부터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가 시행되어 2025년 7월 현재는 월별 또는 반기별로 소득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음⁴⁾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 외에도 「지방세법」, 「사회보험법」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장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다양한 신고의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2)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등

3)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별로 수집해 오다가 현재는 월별로 수집하고 있음

4)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의 자료는 모두 월별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를 이행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과세연도 다음 해에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표 <II-1> 과 같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함
 -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징수하여야 함
 -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⁵⁾
 -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반기별 납부승인자⁶⁾의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음
 - 반기별 납부승인자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자를 의미함

5) 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6)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표 II-1〉 원천징수 대상 소득(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 소득 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 법인 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검색일자: 2025. 4. 23.

〈표 II-2〉 원천징수 신고기한

|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 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1~6월인 경우 7. 10.까지 7~12월인 경우 1. 10.까지 | |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원천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 검색일자: 2025. 4. 23.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 개인인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로 납부하여야 함
-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로 납부해야 함
 - 법인의 지점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 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사업자단위과세⁷⁾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함

〈표 II-3〉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 원천징수의무자 | | 소득세 | 법인세 |
|-----------------------|---------------------------|---|---|
| 거주자 |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
| 비거주자 |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
| 법인 | 일반 | 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나.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가.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나.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 | 본점 일괄납부 신청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 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 |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검색일자: 2025. 4. 2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7)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는 제도(「부가가치세법」 제8조)

〈표 II-4〉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 소득 | | 교부시기 |
|---------|-----------|---|
| 근로소득 | 계속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 일용근로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 중도퇴사자 |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
| 퇴직소득 | |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
| 이자·배당소득 | | 지급하는 때 |
| 사업소득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 이 외 | 지급하는 때 |
| 기타소득 | 종교인 소득 |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 이 외 | 지급하는 때 |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적연금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 퇴직연금·사적연금 | 지급하는 때 |

자료: 법령정보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⁸⁾
 - 가산세액=미납세액×3%+(무·과소납부세액×2.2/10,000×경과일수)≤50%
 -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만 납부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가 없음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일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자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신설하여 활용하고 있음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함
-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은 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용역제공자임
- 소득파악 수단은 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등은 간이 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임

〈표 II-5〉 실시간 소득파악 수단 및 제출주기

| 대상 | | 소득파악 수단 | 제출주기 |
|------|--------|----------------------|------|
| 근로소득 | 상용 | 간이 지급명세서 | 반기 |
| | 일용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 월별 |
| 사업소득 | 40개 업종 | 간이 지급명세서 | 월별 |
| | 9개 업종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월별 |
| 기타소득 | | 간이 지급명세서 | 월별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은 업종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제출서식이 상이함
 - 인적용역제공자란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함
 - 〈표 II-6〉을 살펴보면 40개 업종⁹⁾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9개 업종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9)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유형에는 있으나 세법상 업종코드에는 없는 업종이 분리·신설됨

〈표 II-6〉 인적용역제공자 소득파악 수단

| 업종 |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 소득파악수단 |
|--|--------|-------|----------------------------|
| 보험설계,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기타모집수당, 저술가, 화가관련,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직업운동가, 바둑기사, 연예보조,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다단계판매, 기타자영업, 봉사료수취자, 자문·고문, 병의원, 음료배달 | 40개 업종 | ○ | 간이 지급명세서 |
| 중고자동차판매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소포배달원), 캐디, 간병인, 목욕관리사 (욕실종사원), 물품운반(수하물운반원) | 9개 업종 | × | 간이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 가사도우미, 스포츠강사및트레이너 |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자료: 국세청, 「2024 실시간 소득파악 해설」, 2024, p. 57 표의 일부 내용 발췌

- 간이 지급명세서는 월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함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제출 주기 단축(반기→월)이 시행될 예정임¹⁰⁾
 - 현재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사업소득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소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월별(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의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연간 지급명세서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0)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 11. 30.

- 일용근로소득은 월별로 제출하여야 함
-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함

〈표 II-7〉 연간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 구분 | 신고기한 |
|-------------------------|---------------------|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
| 그 밖의 소득 |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명세서상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수정제출 등) 지급명세서 제출 후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연간 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 (간이 지급명세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 (한도) 중소기업은 5천만원, 이 외의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함¹¹⁾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한 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 이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11) 「국세기본법」 제49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우편 또는 방문(서면)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음

나. 지방세법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인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함¹²⁾
 -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자는 국세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임
 - (정기신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¹³⁾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 다만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함
 -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함¹⁴⁾

12) 「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1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14) 계산방법은 국세인 소득세와 동일함

〈표 II-8〉 원천징수 대상 소득(지방소득세)

| 구분 | 납세지 |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자료: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검색일자: 2025. 4. 23.

〈표 II-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 구분 | 납세의무 |
|-------------------------|--|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 | · 정기신고: 특별징수분 납부(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없음) · 연말정산 등 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 종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환급이 필요한 경우 환급 청구) |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 주민세(이하 '주민세 종업원분')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¹⁵⁾
 -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납세의무자는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임
 - 월평균금액은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사업소의 사업주는 납세의무가 없음
 - 매월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납세지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임
 - 사업소 단위로 납세의무를 판단하고 사업소 단위로 신고하여야 함
 - 과세표준은 지급한 달의 급여총액이고 세율은 1천분의 5임

15) 「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4

- 급여총액은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¹⁶⁾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¹⁷⁾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함
 - 또한 급여총액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됨
 - 신고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의무를 해태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¹⁸⁾ 과소신고가산세,¹⁹⁾ 납부지연가산세²⁰⁾가 있음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함²¹⁾
 - 공제액=(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월 적용급여액²²⁾
-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데, 사업소는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동일한 건물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함²³⁾

16)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17)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 생산직의 특근수당(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 20만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간 받는 급여 등

18) 「지방세기본법」 제53조

19) 「지방세기본법」 제54조

20) 「지방세기본법」 제55조

21) 「지방세법」 제84조의5

22) 월적용급여액=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함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인사발령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독립된 사업소로 보지는 않음
 -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 단순히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의 외관으로 판단하지 않음
- 지방세 징수방법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등이 있는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로,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로 징수하고 있음
-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는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이 있음
 -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분 등이 있음
 -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의 관할 납세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세목별로 관할 납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고 실무상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세입경정금 이체를 요청하고 지급받아 세입처리하는 경우 등
- 주민세 종업원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임²⁴⁾

다. 사회보험법²⁵⁾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4대보험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근로소득)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대상임
-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음
 - (사업소득 등)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임²⁶⁾
-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표 II-10〉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 업종 |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캐디, 소프트웨어기술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방과후학교강사 |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24) 조세심판원 2023지4012(2023. 11. 24.)

25) 윤지영·최세영,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업무가이드』, 2023. 5.

26) 「고용보험법」 제8조

- (입퇴사) 근로자의 입퇴사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인 '자격취득(상실)신고서'임
 - (입사) 신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고 입사자에 대해 자격취득신고를 입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함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까지 신고해야 함
 - (퇴사) 퇴사자에 대해 자격상실신고를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함
 -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까지 신고해야 함
 -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정산을 하고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보수총액) 사회보험별로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함
 - (국민연금) 신고서식은 '소득총액신고서'이고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봄
 - (건강보험) 신고서식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서'이고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봄
 - (고용산재보험) 신고서식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이고 매년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 건설업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함

- (가입자 변경신고) ①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과 ② 보수월액의 변경에 대해 사회보험별로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국민연금) ①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를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②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신고해야 함
 - 단 ②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건강보험) ①의 경우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를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②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신고해야 함

- (고용산재) ①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와 산재보험의 '근로자정보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②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장 변경신고)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회보험별로 내용변경 신고해야 함
 - (국민연금) 사업장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건강보험) 사업장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4일까지 '사업장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고용산재보험) 다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업종)
 - 사업의 기간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기타(공사금액 및 발주처 등)
- (공통서식 및 고유서식) 4대보험 공통서식의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해도 가능하지만 고유서식의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함
 - (공통서식)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2개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적용신고서, 사업장변경신고서, 사업장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고유서식) 고유서식은 해당 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각각 제출해야 함
 - 예를 들어 입퇴사 등 신고를 잘못된 경우 사업장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재개)신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 실신고서, 고용보험의 이직확인서 등

□ 원천징수의무자가 4대보험 관련 취득·변경(정정)·상실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²⁷⁾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반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및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과태료는 각 사회보험별로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자격취득·상실신고, 소득월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1차 위반은 17만원, 2차 위반은 33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²⁸⁾
- 건강보험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경우에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²⁹⁾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³⁰⁾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1, 2, 3차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3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임

27) 「국민연금법」 제131조, 「건강보험법」 제119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28)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9) 「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2호

30)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5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2차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8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3차 이상 위반은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임
- 또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함³¹⁾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2, 3차 위반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임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2차 위반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3차 이상 위반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음)임

라.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³²⁾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면 됨
 - 파견직, 용역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3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함³³⁾
 - 근로계약서의 교부시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임
 - 근로계약서는 서면교부가 원칙이고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작성하더라도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간주함³⁴⁾
 -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도 포함됨
 - 근로계약서 교부 시 반드시 원본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퇴사 후 3년간 보존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일반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명시되어야 함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 ①~④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 ③ 휴일 ④ 연차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근로계약기간 ⑦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른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의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함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⑦ 기숙사규칙 내용

33) 「근로기준법」 제17조

34) 고용노동부, 「민원신청-빠른인터넷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2100925375860968>, 검색일자: 2025. 7. 29.

-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등) 또는 과태료(「기간제법」 등)를 부과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필수항목 누락, 미교부 등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함³⁵⁾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³⁶⁾을 임금대장에 적어야 함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임금총액 ⑥ 총 근로시간수 ⑦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님

-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표 II-11〉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임금대장 미작성 | 30만원(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 기재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 20만원(2차: 30만원, 3차: 50만원) |

자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35) 「근로기준법」 제48조

36)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문자메시지, 이메일, 메신저 등)로 교부해야 함
 - 이메일이나 메시지(SNS 또는 MMS),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음
 - 전자 방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발송된 때'를 교부한 것으로 봄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할 수 있도록 교부할 수 있는데, 사내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는 것을 안내해야 함
 - 사내전산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에 교부한 것으로 봄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표 II-12〉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
|--------------------------|---------------------------|
| 임금명세서 미교부 | 30만원(2차: 50만원, 3차: 100만원) |
|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20만원(2차: 30만원, 3차: 50만원) |

자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2. 신고의무 체계 비교

- 국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지방세법」, 「사회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신고 등의 법적 의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신고 서식과 의무 이행 방식은 상이함

- 개별 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게 하여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소득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하고 복지 등 급부행정을 위한 소득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별개로 본인이 납세자인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해야 하는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내는 회비의 성격으로 재정 마련과 균등 과세를 목적으로 함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야 함
 - 사회보험을 통해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질병치료, 고용보험의 실업 및 고용안정, 산재보험의 산업재해보상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대장을 보관해야 함
-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신고의무 자료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핵심 데이터 항목을 살펴보고 신고체계 간의 연계 가능성과 신고정보 간의 공유 가능한 항목을 검토하고자 함

가. 개별 법에 따른 신고의무 비교

- (신고대상소득)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의 경우 다양한 법적 의무가 요구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원천세와 연간 지급명세서의 신고대상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동일하고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임

- 원천세 및 연간 지급명세서의 신고대상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임
 - 간이 지급명세서의 신고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임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임
 - (사회보험법) 보험별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이 상이함
 -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과세소득 중 법으로 규정된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월액을 부과하고 추후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정산함
 - (고용산재보험) 근로소득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등임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의무는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서류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의무가 부여됨
- (신고 주기)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임금명세서는 월별로, 이 외는 사유 발생 시 신고하거나 교부해야 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원천세와 간이 지급명세서는 월별로, 연간 지급명세서는 연 1회임
 - 반기납부자의 경우 원천세는 반기별로 신고하지만 간이 지급명세서는 월별로 제출해야 함
 - 2025년 7월 현재 상용 근로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함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별로 신고해야 함
 -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별로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함
 - (사회보험법) 일반적으로 신고사유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함
- (납세지) 국세와 4대 사회보험은 관할이 아닌 곳에 신고 및 납부하더라도 납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지방세의 경우 납세지가 중요함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
 - 신고서가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로 제출된 경우라도 신고 효력이 있음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임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움
 - (사회보험법)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고 있음
- (가산세 등 제재) 개별 법마다 가산세, 과태료 등 제재를 두고 있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원천세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없고 원천징수세액 납부 지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불성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음
 -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 (근로기준법) 미교부 등 법적 의무를 해태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함
- (신고방법)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신고의 경우 각기 다른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홈택스, 손택스 등 전자신고와 우편, 방문 등 서면신고
 - (지방세법) 위택스(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모바일 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 (사회보험법)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별 EDI, 우편이나 방문, 팩스 등의 서면신고
 - 사회보험의 경우 팩스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서면 교부가 원칙이나 전자 방식의 교부도 가능함
- (신고내용)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원천세 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등)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자별 소득정보(지급명세서, 사회보험의 다양한 신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서식 교부 등)에 대한 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자별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것임
 - 원천세의 경우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 신고기간(전월, 반기별), 소득종류, 지급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등 지급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함
 -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종류별로 서식이 다르고 소득자의 인적사항·지급금액 등 소득자별 월별 또는 반기별 소득정보를 제출함
 - 연간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종류별로 서식이 다르고 소득자별 연간 소득정보를 신고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은 정산한 소득세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함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원천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에서 지급한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특별징수 명세(소득종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조정액, 납부액 등) 등을 신고함
 -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월평균금액, 총지급급여액, 급여총괄표(사업소 인원, 급여내역,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 등을 신고함

- (사회보험법) 공통신고와 고유신고로 구분할 수 있고 신고서식별 신고내용이 상이함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가, 근무지, 임금항목 등 근로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 임금항목, 임금총액, 근로시간 등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표 II-13〉 소득 지급 관련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세 등 신고의무

| 구분 | 국세 | | | 지방세 | | 4대 사회보험 | | | |
|----------|--------------------------------|------------------|----------------------------------|--------------------------------|--|---|--------------------|-------------------------|----------|
| | 원천세 | 간이 지급명세서 | 연간 지급명세서 | 지방소득세 | 주민세 종업원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목적 | 소득 과세 | 급부행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소득 과세 | 소득 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마련 및 균등 과세 | 소득 보장 (노령, 장애) | 질병 치료, 출산 | 실업 및 고용 안정 | 산업 재해 보상 |
| 대상소득 | 원천징수 대상소득 ¹⁾ | 근로, 사업,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소득 | 원천징수 대상소득 | 근로소득 | 근로, 사업 소득 등 | 종합소득 ²⁾ | 근로, 사업 소득 ³⁾ | |
| 신고주기 | 월별 ⁴⁾ | 매월 또는 반기별 | 연 1회 | 월별 ⁴⁾ | 월별 (매월 납세의무판단) | 신고서식별 상이하고 일반적으로 신고사유 발생 시 1회 | | | |
| 납부주기 | 월별 ⁴⁾ | - | - | 월별 ⁴⁾ | 월별 (매월 납세의무판단) | 월별 | | | |
| 납세지 등 | 주된 사업장 소재지 등 | | | 근무지 등 | 사업소 소재지 |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공단별로 수행) 사업소 소재지 | | | |
| 가산세 등 제재 |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납부지연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 | 사해보험별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 | | |
| 신고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손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등) | | | 전자신고(위택스, 이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등) | 전자신고(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 보험정보연계센터, 사회보험별 EDI 등),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 | | | | |
| 신고내용 | 총인원·총지급액·원천세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세 ⁵⁾ | 총인원·총지급액·원천세 | 종업원수·총급여액·월평균급여액 | 공통신고와 고유신고로 구분할 수 있고 신고서식별 신고내용 상이 | | | |
| | 소득자 인적사항 포함 여부 | X | O | X | X | O | O | O | O |

- 주: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 2)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우선 소득월액을 부과하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과세소득 중 일부를 소득월액으로 반영하여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정산함
- 3)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종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고용보험을 원천공제해야 함
- 4)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 반기별
- 5)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신고정보의 연계 및 공유 현황

1) 국세의 원천세와 지방세의 지방소득세

- 국세의 원천세 신고와 지방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국세와 더불어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다른 지방소득세³⁷⁾와 달리 국세의 부가세율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국세의 원천세 신고의 서식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서, 부표, 명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³⁸⁾
 - (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조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소득자 소득구분, 원천징수 명세(인원, 총지급액 등 소득 지급관련 정보와 소득세, 농특세, 가산세 등 징수세액 정보), 당월조정환급세액,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납부세액
 - (환급세액 조정) 전월 미환급세액 계산내역, 당월 발생 환급내역 등
 - (부표 등)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37)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만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달리 정할 수 있게 됨

38)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지방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의 서식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는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 내역 등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음³⁹⁾
 - (특별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상호(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 (특별징수 내역) 소득종류, 징수연월일, 납세의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표준, 산출세액, 조정액(환급액), 납부액

- 지방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면 되는데, 서식은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신청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⁴⁰⁾
 - (특별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 (환급신청내용) 소득의 종류, 귀속 과세연도, 당초 지방소득세, 경정 후 지방소득세, 조정환급분, 지방소득세환급금, 납세지, 지급계좌
 - 환급청구 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함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 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9)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4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신고는 국세신고가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신고내용이 국세신고와 매우 유사함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신고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함
 - 국세의 원천세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인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없음

- 현재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연동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식별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조회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음

2) 국세의 지급명세서와 사회보험의 총액 신고

- 사회보험공단은 국세의 지급명세서 자료를 연계하여 사회보험의 총액 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사회보험도 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산정함

-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2014년 10월 지급분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상용 근로소득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세의 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총액신고를 면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전년도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함
 - 근로소득 과세자료 상이자, 근로소득 과세자료와 30% 이상 상·하향자 등의 경우 별도의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함
-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개정 전) 원천징수의무자의 보수총액신고(3월)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4월) → 연간 지급명세서 연계 및 정산(9월)
 - (개정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보수총액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및 보험료 정산(4월) → 연간 지급명세서 연계 및 정산(9월)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폐지 의원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⁴¹⁾
 - 참고로 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보수총액신고 폐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⁴²⁾⁴³⁾

3)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의 과세자료 공유

-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조정제도’ 운영에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가입자는 당해 연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 조정제도를 통해 당해 연도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41) 의안정보시스템, 「[22077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O4M1N2L2J6K1S4S3Q0R3Q9Q6O0P7, 검색일자: 2025. 11. 3.

42) 고용노동부,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024, 검색일자: 2025. 11. 3.

43) 해당 보도자료의 2쪽 <2> 부분 참조

-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입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할 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증빙서류로 대체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소득자료를 공유하고 있음
 - 국세청은 소득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통합 관리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과 함께 별도의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 세금계산서 관리기능이 포함되며 소득자료 관련 분석기능은 더욱 고도화됨
 - 간이 지급명세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전용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4)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정보 타 부처 제공 현황

- 국세청이 수집하는 소득정보는 조세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통계, 복지, 금융 관련 심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2025년 7월 현재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15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⁴⁴⁾
 - 보건복지부 등 15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은 이를 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심사, 증빙 간소화 등 총 21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각 기관은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원천 자료로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타 기관의 소득정보와 대조하여 복지급여의 적정성 검증 용도로 사용하기도 함

44)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체계 전환 눈앞」, 2025. 7. 13., <https://blog.naver.com/ontoincha/223932900858>, 검색일자: 2025. 7. 29.

- 가령 보건복지부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다른 기관의 행정자료와 함께 교차검증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⁴⁵⁾
-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⁴⁶⁾ 때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포함한 68종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수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함
 - 확인조사 때 수집하는 소득정보는 국세청의 과세자료,⁴⁷⁾ 사회보험공단의 소득정보,⁴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임금내역, 연금 운영기관의 연금정보⁴⁹⁾ 등임
 -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국세청의 소득정보가 완전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보조적 검증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표 II-14〉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 타 부처 제공 현황

| 기관 | 목적 |
|----------------|------------------|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징수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징수 |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산정 및 징수 |
| 통계청 | 기업생멸행정통계 |
| | 임금근로일자리소득편 |
| | 소득이동통계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생애계층별사회통계 |
| 병무청 | 병무 사범의 예방 및 단속 |
| 보건복지부 | 급부·지원의 확인조사 |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정책 기획·심의 |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산정 및 징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심사 |

45)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4. 9. 26.

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인조사'는 부적정 수급 차단 및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인 수급 적정성 조사·확인 실시하는 것으로 2010. 7월 최초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28회 정기조사 실시함

47) 종합소득, 일용근로소득정보, 연말정산사업장인원수정보 등

48) (근로복지공단) 고용 및 산재보험 월평균보수금액 등,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보수월액 등, (국민연금공단) 소득신고액 등

49) 교직원연금공단(사회복지연금급여), 국방부(군인퇴직연금급여, 지역연금), 한국농어촌공사(농지연금),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표 II-14〉의 계속

| 기관 | 목적 |
|------------------|-------------|
| 감사원 | 행정기관 등 감사 |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급부·지원의 심사 |
| 교육부(사회보장정보원) | 학자금 지원 |
| 국가보훈처(사회보장정보원) | 국가유공자지원 |
| 국토교통부(사회보장정보원) | 보금자리주택 등 심사 |
| 한국장학재단(사회보장정보원) | 학자금대출 등 지원 |
| 고용노동부(사회보장정보원) | 일자리 지원 |
| 예술인복지재단(사회보장정보원) | 창작지원금 심사 |

자료: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 「매월 780만 명 실시간 소득파악, 소득 중심 사회보험 체계 전환 눈앞」, 2025. 7. 13., <https://blog.naver.com/ontoincha/223932900858>, 검색일자: 2025. 7. 29.

3.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 민간업체가 개발한 행정시스템은 논외로 함

가. 행정시스템 현황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할 수 있음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함⁵⁰⁾

- 서면신고는 납세자가 종이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신고방식임
 -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신고 관련 서류를 본인 PC에서 작성한 후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방식은 '신고서작성'과 '파일변환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신고서작성은 납세자가 직접 빈칸을 채우면서 작성하는 방식임
 - 파일변환신고는 회계세무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전자파일을 업로드하여 형식과 내용을 검증하고 파일을 변환하여 전자전송하는 방식임
-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신고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음
 - (원천세 신고) 제출월의 다음 달 25일부터 홈택스를 통한 수정신고가 가능함
 - 기한후신고는 지급월의 다음 달 25일부터 가능함
 - (지급명세서 제출) 휴·폐업으로 인한 지급명세서, 수정이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 수시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지급명세서에 대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수시제출)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제출은 매월 가능함
 - (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고 수시로 제출 가능함

[그림 II-1]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전자신고(직접 신고서 작성)

| | | | |
|---|--|---|--|
| ○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신고서 불러오기 새로작성하기 | | | |
| * 제출년월 | 2025 년 06 월 | * 귀속년월 | 2025 년 04 월 |
| * 지급년월 | 2025 년 04 월 |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small>① 확인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small> | |
| <small>※ 귀속년월 변경은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전에 수정 가능합니다.</small> | | | |
| ○ 원천징수신고구분 | | | |
| * 원천신고구분 |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 <input type="radio"/> 반기 | * 신고구분 | <input type="radio"/> 정기 <input type="radio"/> 수정 <input checked="" type="radio"/> 기한후 |
| 연말정산 |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포함 | 소득처분 |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신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급신청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
| <small>※ 당월환급은 '환급신청' 체크 후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small> | | | |
| ○ 원천징수의무자 | | | |
| 성명(법인명) | <input type="text"/> | * 성명(대표자) | <input type="text"/> |
|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전자우편주소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선택- |
| 사업장주소 | 우편번호 <input type="text"/> 주소검색 <input type="text"/> | | |
| | 도로명주소 <input type="text"/> | | |
| | 지번주소 <input type="text"/> | | |
| * 일괄납부여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 사업자단위과세여부 |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
| ○ 소득종류선택 | | | |
|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 <input type="checkbox"/> 퇴직소득 |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 <input type="checkbox"/> 기타소득 |
|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 <input type="checkbox"/> 저축해지추징세액 |
| <input type="checkbox"/> 양도소득 | <input type="checkbox"/> 법인원천 |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세액) | |
| 소득종류선택시 유의사항 ▾ | | | |
| ○ 세무대리인 | | | |
| 성명 | <input type="text"/> |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자료: 홈택스,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정기신고」, www.hometax.go.kr, 검색일자: 2025. 4. 23.

[그림 11-2]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전자신고(전자파일 변환)

전자파일변환

· 변환순서 : [찾아보기] → [형식검증하기] → 비밀번호 입력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이동] →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요약내용 확인 후 [전자파일제출하기] → '일괄접수중' 확인
 → [신고내역 조회 (접수중·납부서)]

○ 변환대상파일선택
 ※ 평문 파일이나 암호화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파일내역 [찾아보기]

| 번호 | 전자파일명 | 파일크기 |
|----|-------|------|
| | | |

○ 처리내역
 ※ 오류납세자수, 정상납세자수 건수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파일처리내역

| 파일이름 | 파일형식검증 | | | 내용검증 | |
|------|------------|------------|----------------|--------------------|--------|
| | 대상 납세자수 | 오류 납세자수 | 내용검증대상 납세자수 | 오류납세자수 (확인납세자수) | 정상납세자수 |
| | 리인(줄)수 | 오류항목수 | | 오류항목수 | |
| | | | | | |

· 진행현황

진행중인 검증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후 [형식검증하기] 눌러 진행하세요.

형식검증하기 >
 형식검증결과확인 >
 내용검증하기 >
 내용검증결과확인 >
 전자파일제출

자료: 홈택스, 「세금신고→원천세 신고→파일변환신고」, www.hometax.go.kr, 검색일자: 2025. 4. 23.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 지방세는 우편 또는 전자로 신고할 수 있음⁵¹⁾

- 우편으로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봄
-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봄

51) 「지방세기본법」 제25조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방세 관련 정보 관리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⁵²⁾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이택스 등이 있음⁵³⁾
 - '위택스(WeTax)'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임
 - 위택스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이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신고·전자송달·전자고지·전자납부 및 전자민원 등의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행정안전부는 2006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택스 개발을 위탁했고 수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외주용역을 통해 위택스를 개발함
 -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모든 지방세를 전자신고, 전자납부 등을 할 수 있음
 - '이택스(E-Tax)'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가 개발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임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1년 6월에 E-Tax를 개통함
 - 부산시는 2004년, 인천시는 2005년, 대구시는 2009년에 개발해 운영하고 있음
 - '스마트 위택스 앱'이란 이동단말기(스마트폰 등)에서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말함
- 지방세 전자신고를 위한 행정시스템은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가 있음
 - 위택스에서 서울시의 일부 지방세목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⁵⁴⁾
 -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를 위해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를 이중으로 접속하여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5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53)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54)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서울시 지방세도 신고·납부 가능!」, 보도자료, 2009. 12. 4.

-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위택스와 서울시의 이택스를 연계하기로 협의하고 연계시스템을 개발함
- 현재 지방세 전자신고는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로 따로 운영되고 있음⁵⁵⁾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세우고 모든 지방세 납세자가 행정안전부의 위택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음
 - 반면 서울시는 시스템 통합은 기존 이택스 운영 노하우가 사장되고 지방분권 및 정부의 예산 효율성에 역행하게 되므로 통합을 거부하고 있음
 - 서울시 등의 이택스시스템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특례를 두고 있음

〈표 II-15〉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의 종류

| 서울특별시 | 그 외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자료: 국세청, 『2020 원천세 신고안내』, 2020, p. 28.

- 지방세 전자납부를 위한 행정시스템은 위택스와 이택스로 구분할 수 있음⁵⁶⁾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음

〈표 II-16〉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의 종류

| 행정안전부 | 그 외 지역 |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
|-------|--------|--------------------|
| WeTax | | E-Tax(지방세납부시스템) |

자료: 류영아,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4호(통권 112), 2020. 12., p. 106, 〈표 1〉.

55)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부칙 제2조

56) 류영아,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4호(통권 112), 2020. 12., p. 106.

3) 「사회보험법」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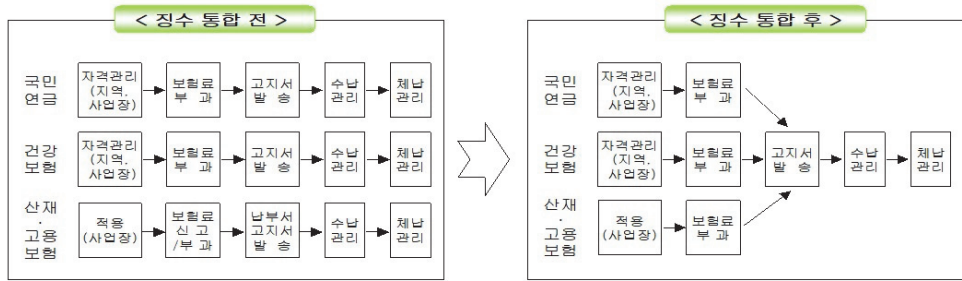
-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통합되었고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해당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험제도는 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는 ‘자격업무’ ② 부과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보험료를 수납하거나 체납관리하는 ‘징수업무’ ③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의 혜택을 돌려주는 ‘급여업무’로 구분됨
 - 2011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관리하고 있음
 - 사회보험별로 운영 취지와 특수성⁵⁷⁾ 때문에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여전히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보험료 고지서 발송, 수납 관리, 체납 관리 업무로 구분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온라인으로는 포털사이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⁵⁸⁾을 통해 징수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4대 사회보험 공단은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이용자는 신속 간편하게 4대보험 업무를 신고하고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4대 보험의 징수 창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험료 고지 및 납부 업무는 물론 관련 민원 처리까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이용자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57) 사회보험별로 가입 대상이 다르고 보험료 부과체계가 통일되지 않음

58)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은 보험료 납부와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그림 11-3]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 체결」, 보도자료, 2009. 6. 5., p. 8.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이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험료 납부, 고지내역 조회, 신청 서비스, 제증명 발급, 자료실이 있음

- (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정기분 및 미납분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음
 - 다른 사업장관리번호의 보험료를 대납할 수 있음
 - (납부방법) 은행 즉시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 은행 즉시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상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고지내역 조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사회보험료의 고지내역과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보험 종류와 조회할 연도를 선택한 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을 받아볼 수 있음
- (신청 서비스) 이용자는 고지서, 환급금, 심사청구 등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징수포털고지 등 고지방법을 신청하고 고지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⁵⁹⁾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음
 - 온라인으로 심사청구⁶⁰⁾를 제출할 수 있음

59)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금액으로,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함

60)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분쟁을 징수심사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위

- (제증명 발급/자료실)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증명서 진위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함

〈표 II-17〉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 구분 | 이용 가능 서비스 |
|---------|--|
| 보험료 납부 |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대납, 징수포털 납부결과 확인 |
| 고지내역 조회 |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보험료 산출내역 신청, 징수포털 고지내역 조회 |
| 신청 서비스 | 이메일고지, 모바일고지, 징수포털고지, 고지서 재발급, 자동이체 신청/해지, 납부기한 연장/신청,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심사청구 |
| 제증명 발급 | 납부확인서 발급, 완납증명서 발급, 수납확인서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전자팩스 수신조회 |
| 자료실 | 납부업무 Q&A, 이용지원 FAQ, 보험료 납부방법, 서식 자료실, 법령정보 건강 Law, 이용약관 |

자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jpca/JpCab00101.do>, 검색일자: 2025. 4. 23.

-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기관별로 관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신고 또는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로는 공통신고와 고유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공통신고) 하나의 공통서식으로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됨
 - (고유신고)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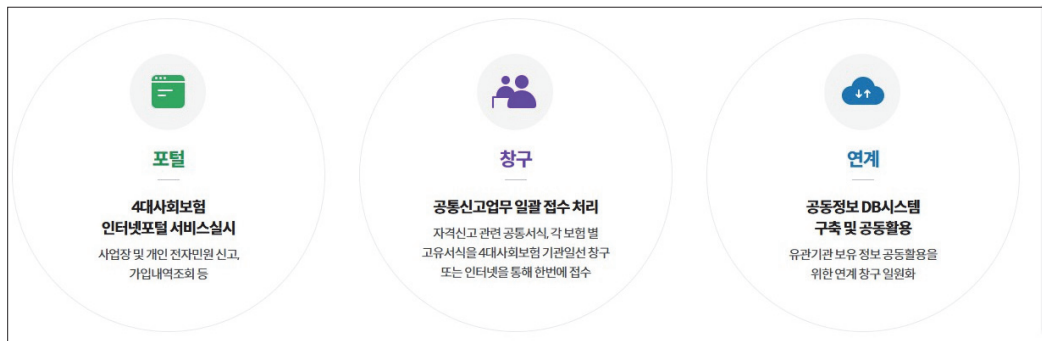
- 국민연금공단은 각 기관간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구축함⁶¹⁾⁶²⁾
 - 2002년 10월, 국민연금공단 내 정보연계센터를 설립함
 - 총 5개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참여로 설립됨

정심판절차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신속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

61)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장으로 통합 발급」, 보도자료, 2011. 8. 1.
 62)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025년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100% 활용하기」, 2024. 10., p. 3.

- 2011년 8월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와 사회보험 일선지사에서 한 번에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됨
 - (공동정보 DB 구축 및 활용) 국세청 등 9개 기관의 67종 자료(사업자 등록자료, 휴폐업 증명자료, 주민등록 변동자료 등)를 연계하여 유관기관 DB를 구축하고 활용
 -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사회보험 간 각기 관리되던 사업장관리번호를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사회보험 신고편리성이 증대됨
- 2022년 10월, 기존 포털사이트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재구축함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4대사회보험 신고내역을 처리기관으로 전송하고 공통신고 등에 대해 기관별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원스톱 민원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용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공통신고를 수행할 수 있어 신고서식과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됨

[그림 II-4]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업내용



자료: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센터소개」, <https://www.4insure.or.kr/pbiz/feii/sinsCntrIntroView.do>, 검색일자: 2025. 4. 23.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는 공통신고와 함께 4대사회보험 통합 가입증명서 발급 등 30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보험 자격신고와 같이 가입, 변경, 탈퇴 등 관련된 업무를 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연계센터 포털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표 II-18>과 같음

<표 II-18> 국민연금공단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 구분 | 신고서식 | 신고사유 |
|--------|---|--|
| 사업장 업무 | 사업장 성립 신고 | 사업장 신규 설립 시 4대보험 가입 |
| |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폐업 시 4대보험 해지 |
| |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 사업장의 가입내역을 변경 |
| | 자격취득 신고 | 근로자 고용 시 4대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
| | 자격상실 신고 | 근로자 퇴직 시 4대보험 해지 |
| | 내용변경 신고 |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가입내역 변경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취득·상실 |
| | 보수월액 변경신청 | 보수월액 변경 |
| |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근로자가 휴직이나 복직 |
| | · 건강보험 근무처/근무내역 변동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신고 | 근로자의 근무처 변동 |
| | · 이직확인서 | 퇴직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
| |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
| | · 보험료지원신청 신고 | 보험료지원 |
| 개인 업무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 |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특정 사유로 상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취득·상실 신고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신고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해외 출입국, 군입대 등) |

자료: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https://www.4insure.or.kr/pbiz/feii/sinsCntrIntroView.do>, 검색일자: 2025. 4. 23.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없는 각 기관의 고유업무는 각 기관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로 접수하면 됨
 - 공단별 공식사이트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EDI) 공단별로 EDI를 제공하고 있음
 - EDI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의 약자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서식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를 말함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KT EDI 시스템을 도입하여 EDI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활용했고⁶³⁾ 이후 공단별 자체 EDI를 구축함
 - KT EDI 서비스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표 II-19〉 4대 사회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 구분 | 온라인 사이트 | 주요 업무 |
|----------------------|--------------------|------------------------|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전반적인 국민연금 업무 |
| 국민연금 EDI | edi.nps.or.kr/ | EDI 민원 및 기타 EDI 업무 |
| 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전반적인 건강보험 업무 |
| 건강보험 EDI 포털 | edi.nhis.or.kr | EDI 민원 및 기타 EDI 업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hira.or.kr | 요양급여 심사 및 평가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total.comwel.or.kr | 전반적인 고용·산재보험 업무 |
| 사회보험 EDI 포털(KT) | bips.bizmeka.com | EDI 민원 및 기타 EDI 업무(유료) |

자료: 사회보험공단의 공식사이트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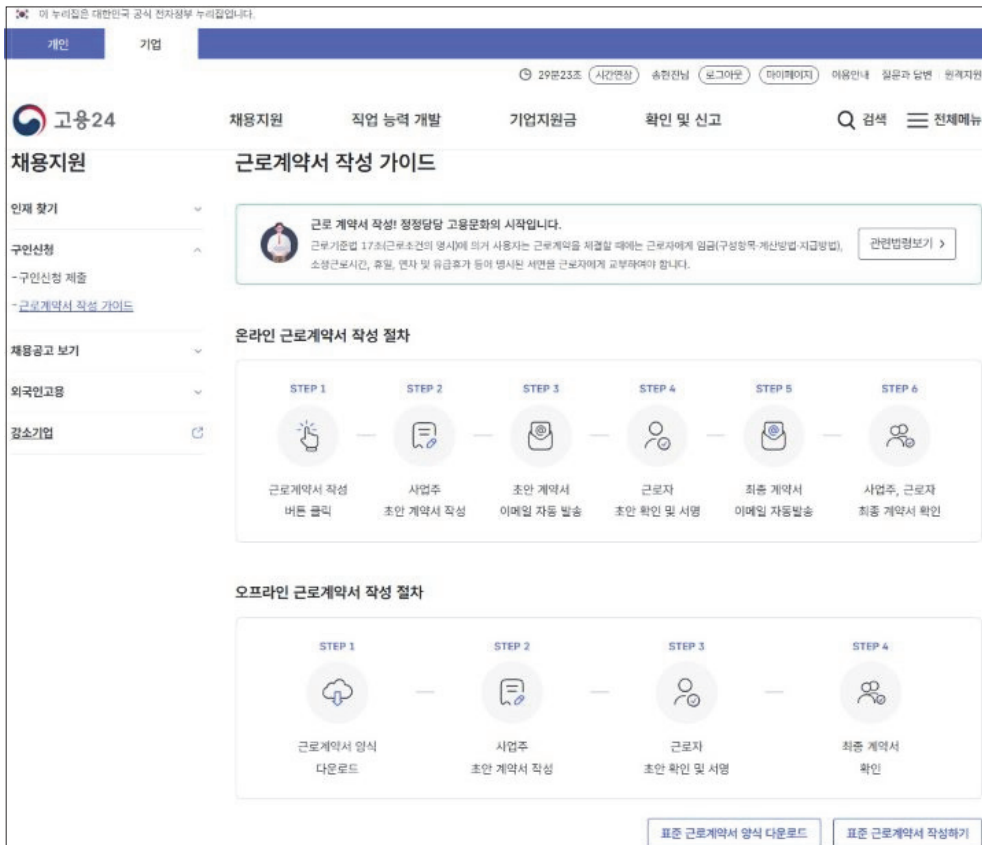
- 고용24 사이트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음⁶⁴⁾

63) 『NSP통신』, 「KT-GXS, 국내 기업과 정부 기관에 B2B EDI 시스템 구축」, 2008. 10. 29.,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11429>. 검색일자: 2025. 4. 23.

64) 고용24, 「휴·채용정보-구직신청-이력서/자기소개서관리-근로계약서작성가이드」, <https://www.w>

-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까지만 보관 후 삭제되므로 반드시 출력 후 보관해야 함
- 19세 이상 성년만 이용 가능함
-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메일로 발송됨

[그림 II-5] 고용24의 전자근로계약서



자료: 고용24, 「홈→채용정보→구직신청→이력서/자기소개서관리→근로계약서작성가이드」, <https://www.work24.go.kr/wk/z/z/1100/workContractInput.do#none>, 검색일자: 2025. 4. 23.

□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포함⁶⁵⁾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함

[그림 11-6]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일"만 기재
 ➤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수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도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금
 - 월(일, 시간)급: 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있음 () _____ 원, 없음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없음 ()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해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임금을 제3자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합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해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계산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선에 체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히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주소:
 대표자: (서명)
 (근로자)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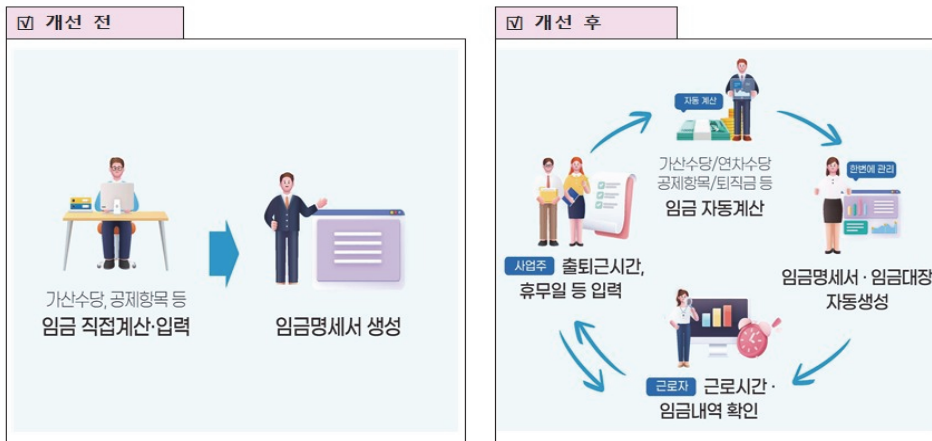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mainpop2.do>, 검색일자: 2025. 4. 23.

65)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mainpop2.do>, 검색일자: 2025. 4. 23.

- 임금대장은 법적 서식이 있고 한글 파일로 양식을 제공함
 - 정부가 제공하는 임금대장의 행정시스템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는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서식은 없으며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⁶⁶⁾
 - 2021년 1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함
 -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기능이 탑재됨
 - 각종 수당, 공제액 등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함
 -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기를 제공함
 - 개별작성 기능을 활용하여 근로자 1명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PC에 내려받아서 다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음
 -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함
 -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임금대장이 자동으로 생성됨

[그림 II-7]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https://www.moel.go.kr/wageCal.do>, 검색일자: 2025. 4. 23.

66)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https://www.moel.go.kr/wageCal.do>, 검색일자: 2025. 4. 23.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⁶⁷⁾을 대상으로 ‘보수원클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⁶⁸⁾
 - 소속 근로자의 인사,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소득세와 사회보험 신고서식 등을 작성할 수 있음
 - (조세)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회보험) 4대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기준법상 의무)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자명부
 -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타 소득에 대한 법적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함

나. 행정시스템 비교

- 행정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세) ‘홈택스’로 일원화되어 있고 국세청이 운영함
 - (지방세) ‘위택스’와 ‘이택스’로 이원화되어 있고 위택스와 이택스는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위택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음
 - 이택스는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보험) 국민연금공단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운영하고 각 공단은 개별적으로 EDI를 운영하고 있음
-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함
 - (지방세) 서울시를 제외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가 가능함

67) 노무제공자, 예술인 제외

68)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보수원클릭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검색일자:

- 납세지가 서울시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위택스와 서울시의 이택스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를 위택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서울시는 통합을 거부하고 있음
- 통합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이택스 시스템의 개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 이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함
- (사회보험) 공통신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개별신고는 공단별 EDI를 통해 가능함

- 납부서 출력, 납부 확인 등 납부 행정은 시스템별로 관리되고 있음
 - (지방세)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가능함
 - (사회보험)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포털에서 관리하고 있음
 -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통합됨

- 증명서 발급 등 민원 업무도 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지방세) 서울시를 제외하고 위택스에서 대부분 가능함
 - (사회보험) 공통 민원은 연계센터 중심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공단별 EDI에서 가능함

〈표 II-20〉 국세 등 소득지급 관련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비교

| 구분 | 국세 (원천세, 간이·연간 지급명세서) | |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중영원분) | | | 4대 사회보험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 | 홈택스, 손택스 | 위택스 | 서울시 | 이택스 부산·인천·대구 |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공단별 EDI | |
| 운영기관 | 국세청 | 행정안전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시 | 각 지방자치단체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
| 신고 가능 여부 | ○ | ○ | ○ | X | ○ | X | ○ | |
| 납부 행정 관리 가능 여부 | ○ | ○ | ○ | ○ | X | ○ | X | |
| 증명서발급 등 민원업무 | 홈택스 중심으로 일원화 | 서울시를 제외하고 위택스에서 대부분 가능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위택스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 공통 민원은 연계 센터 중심으로 처리 가능 | 납부 관련 민원 가능 |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 처리 가능 |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

- 해외 주요국의 사례로 영국, 일본, 미국, 스웨덴을 조사함
 - 조세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국가인 영국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함
 - 영국은 과세관청인 HMRC를 중심으로 조세와 사회보험이 징수되고 실시간 소득 파악의 선구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소득파악 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 아울러 과세정보 등 과세 관청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도 함께 소개함

1.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비교

가. 영국(PAYE)

-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과 세율이 상승하고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을 통한 세금의 납부 방법이 필요하여 1944년 PAYE(Pay As You Earn)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1975년 국민보험이 추가되고 1984년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함⁶⁹⁾

69) ATT, "A Brief History of PAYE," 2024. 5. 14., <https://www.att.org.uk/employers/welcome-employer-focus/brief-history-payee>, 검색일자: 2025. 6. 19.

- 영국 과세당국인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는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PAYE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13년 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를 도입해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한 과세기반을 구축함

1) 신고의무

- 영국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로열티소득, 기타소득 등⁷⁰⁾이고 원천징수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임
 - 영국 거주회사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고 REITs 등 특정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2016년 4월 6일부터 금융기관은 이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음
 - 연금, 특정 임대료(예: 전선로 휴게소 임대료) 등 기타소득(Other income)은 원천징수 대상임
-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침⁷¹⁾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천징수 보고 → 원천징수세액 납부 → 과세연도 다음 해에 최종 급여보고서 제출 → P60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과세 월마다 영국의 과세관청인 HMRC에 PAYE 시스템을 이용하여 FPS(Full Payment Summary)를 보고해야 함⁷²⁾
 - 과세 월은 매월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임
 - 과세연도는 4월 6일부터 시작됨

70) IBFD, "United Kingdom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Last Reviewed: 5 May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uk_s_1.1.&refresh=1750812713774%23ita_uk_s_1.10.3., 검색일자: 2025. 6. 19.

71) HMRC, "Payroll: annual reporting and tasks," <https://www.gov.uk/payroll-annual-reporting>, 검색일자: 2025. 6. 19.

72) HMRC, "Running payroll," <https://www.gov.uk/running-payroll>, 검색일자: 2025. 6. 19.

- 필요한 경우 EPS(Employer Payment Summary)를 통해 보고해야 함
 - 과세 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산휴수당·출산휴가 수당·고용수당 등 법정 수당 지급 및 철회, 건설산업제도(CIS)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경우, 견습세 지불 등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급여 정보기록,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등 원천징수세액 계산, 급여명세서 작성 등 원천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⁷³⁾
 -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자 등 온라인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의 경우 간이세액표(Taxable Pay Tables)에 따른 원천징수를 허용함
- 납부는 과세 대상 월(tax month)의 다음 달 22일까지 납부해야 함⁷⁴⁾
 - FPS를 제출 후 다음 달 10일부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PAYE 청구서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됨
 - 소득세, 1등급 및 1B등급의 NIC(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1A급 NIC, 학자금 대출 상환금, CIS, 견습세 등
 - 월평균 원천징수세액이 1,500파운드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분기별 납부가 가능⁷⁵⁾
- 우리나라의 지급명세서와 같은 신고의무는 없고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4월 5일) 이전 까지 연간 FPS를 제출하면 됨
 - 연간 FPS는 별도의 신고서가 아닌 FPS의 최종 형태임
- 근로자 개인별 연간 FPS 제출과는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 등을 기재한 P11D를 7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함
 - 보고 대상인 복리후생 등이란 과세대상이거나 1A급 NIC 부과대상인 복리후생 등을 의미함
 - 현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항목별 또는 케이스별로 과세대상 여부와 국민보험료 납부대상 여부가 상이함

73) 예외적으로 영세사업자 등 온라인 신고가 면제된 사업자의 경우 간이세액표(Taxable Pay Tables)에 따른 원천징수를 허용함

74) HMRC, "Pay employers' PAYE," <https://www.gov.uk/pay-payee-tax>, 검색일자: 2025. 6. 19.

75) HMRC, "Running payroll," <https://www.gov.uk/running-payroll>, 검색일자: 2025. 6. 19.

-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주차요금, 육아바우처 등이 있음⁷⁶⁾
- 연간 FPS를 제출하고 난 뒤, 과세연도 마지막 날(4월 5일) 현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P60을 5월 31일까지 교부해야 함⁷⁷⁾
 - P60은 총소득, 기납부한 소득세와 NIC 등의 정보가 담긴 서류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유사해 보임
 - P60은 급여 소프트웨어에서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P45를 교부함
- HMRC는 연간 FPS의 세금과 최종 세金的 차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P800을 발송하여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함
 - 착오나 고용관계의 변화⁷⁸⁾로 세액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HMRC는 6월에서 11월 사이 정확한 세액이 계산된 P800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여 환급 청구 또는 추가 납부가 가능하게 함
- FPS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HMRC는 지연신고통보서를 보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음
 - 신고기한으로부터 3일까지는 부과하지 않으며 3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근로자의 수가 1~9인 경우 100파운드, 10~49인 경우 200파운드, 50~249인 경우 300파운드, 250 이상인 경우 400파운드를 부과함⁷⁹⁾
 - 2개 이상의 PAYE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76) HMRC, "Expenses and benefits: A to Z," <https://www.gov.uk/expenses-and-benefits-a-to-z>, 검색일자: 2025. 6. 19.

77) HMRC, "Getting P45, P60 and other forms: employer guide," <https://www.gov.uk/get-pay-aye-forms-p45-p60>, 검색일자: 2025. 6. 19.

78) 퇴사 후 같은 달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근로지원수당이나 구직자수당을 수령하는 자

79) HMRC, "What happens if you do not report payroll information on time," <https://www.gov.uk/guidance/what-happens-if-you-dont-report-payroll-information-on-time>, 검색일자: 2025. 6. 19.

- 신고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인 잠재적 결손 세입(potential loss revenue)의 일부로 부과함⁸⁰⁾
-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외에도 견습세(Apprenticeship Levy)⁸¹⁾ 등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영국은 질적·양적인 견습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견습세 제도를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함
 - 견습세는 국세임
- 견습세 납세대상자는 EPS를 통해 보고하고 납부하면 됨
 - 납세대상자는 연간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300만파운드 이상인 기업임
 - 납부금액은 월 급여액의 0.5%임
 -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음
 - 신고기한은 매월 19일까지임
 - 매달 PAYE 청구서에 견습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납부하면 됨
 - 견습세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은 없으며 신고 오류, 납부 지연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함⁸²⁾
 - 신고 오류에 대한 벌금은 Schedule 56 of the Finance Act 2009를 적용함
 -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은 Schedule 24 Finance Act 2007을 적용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지방세로 과세되는 세목은 확인되지 않음
 - 영국의 지방세(Council Tax)는 자산 과세의 성격인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80) HMRC, “Compliance checks: penalties for inaccuracies in returns or documents — CC/FS7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checks-penalties-for-inaccuracies-in-returns-or-documents-ccfs7a>, 검색일자: 2025. 6. 19.

81) IBFD, “United Kingdom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4. Taxes on Payroll(Last Reviewed: 1 May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cta/html/cta_uk_s_004.html%23cta_uk_s_4.2., 검색일자: 2025. 6. 19.

82) HMRC, “PAYE Manual,”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paye-manual/paye56140>, 검색일자: 2025. 6. 19.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나 급여에 대해 HMRC로 제출한 신고서 내역을 유지해야 하는 세법상 신고자료 보관의무는 있고 임금명세서(payslip)는 교부해야 함
 - 임금명세서는 소득, 세금, NIC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공제 전후 수입, 급여를 받을 때마다 변동될 수 있는 공제 금액,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2) 행정시스템

-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HMRC는 PAYE 시스템을 2012년 2월 시범 도입하였고 2013년 4월부터 PAYE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의무화됨
 - PAYE 시스템은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소득세, NIC를 징수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스템임
 -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따라 영국의 복지프로그램인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s)’을 위한 플랫폼 제공이 가능해짐
 - HMRC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에 실시간 소득정보를 제공하고, DWP는 매월 유니버설 크레딧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음
- HMRC는 인증된 상용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천징수, 견습세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도 작성할 수 있음
 - HMRC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위해 무료 급여 소프트웨어인 ‘Basic PAYE Tool(BPT)’를 제공하고 있음
- PAYE 시스템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소득 및 세금 코드에 따라 세금, NIC 기여금 등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제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PAYE 시스템 이용을 위해 HMRC에 등록하여 ‘사용자 식별번호 (PAYE reference number)’를 부여받아야 함
 - 등록 후 고용주는 급여일 또는 그 이전에 직원의 급여, 공제 및 기여금을 HMRC에 보고해야 함

- 소득자는 ‘세금 코드(tax code)’를 할당받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세금 코드를 통해 공제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⁸³⁾
 -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데, 영국은 소득자별로 부여되는 세금 코드로 공제, 감면 등이 반영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됨
 - 소득자의 세금 코드는 개인의 비과세 수당, 과세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소득자마다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됨
 - 세금 코드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되어 있음
 - 숫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자가 얼마만큼의 비과세 소득을 얻는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개인 수당(Personal Allowance)과 같은 비과세 수당은 종업원의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데, 세금 코드 1250L가 부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1만 2,500유로가 비과세 처리되어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됨
 - 문자는 <표 III-1>과 같이 소득자의 상황을 나타냄
 - 정확한 세금 코드를 통해 과다 납부 또는 과소 납부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소득자의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요함
 -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경우, 과세 대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소득이 생긴 경우, 주(State) 연금 금액이 변경된 경우, 고용주의 복리후생 혜택에 변경이 생긴 경우, 결혼 공제의 변동,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제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 코드인 긴급 세금 코드(Emergency tax codes)를 적용할 수 있음

83) HMRC, “Tax codes,” <https://www.gov.uk/tax-codes/what-your-tax-code-means>, 검색일자: 2025. 6. 19.

〈표 Ⅲ-1〉 영국의 세금 코드

| 문자 | 내용 |
|-----|---|
| L | 표준 개인공제 |
| M | 결혼 공제(개인 공제의 10%가 이전됨) |
| N | 결혼 공제(개인 공제의 10%를 이전함) |
| T | 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다른 계산이 포함된 경우 |
| OT | 소득공제가 모두 공제되어 소진되었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세금 코드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
| BR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기본 세율로 과세 |
| D0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높은 세율로 과세 |
| D1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추가 세율로 과세 |
| NT | 세금 면제 |
| S | 스코틀랜드 세율로 과세 |
| SOT | 스코틀랜드 세율로 과세+소득공제가 모두 공제되어 소진되었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세금 코드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
| SBR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스코틀랜드의 기본 세율로 과세 |
| SD0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스코틀랜드의 중간 세율로 과세 |
| SD1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스코틀랜드의 높은 세율로 과세 |
| SD2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스코틀랜드의 선급 세율로 과세 |
| SD3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스코틀랜드의 최고 세율로 과세 |
| C | 웨일즈 세율로 과세 |
| COT | 웨일즈 세율로 과세+소득공제가 모두 공제되어 소진되었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세금 코드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 |
| CBR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웨일즈의 기본 세율로 과세 |
| CD0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웨일즈의 높은 세율로 과세 |
| CD1 |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연금이 있는 경우로 웨일즈의 추가 세율로 과세 |

자료: HMRC, "Tax codes," <https://www.gov.uk/tax-codes/what-your-tax-code-means>, 검색일자: 2025. 6. 19.

□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HMRC의 '개인 세금 계정(Personal tax account, PTA)'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⁸⁴⁾⁸⁵⁾

84) HMRC, "Personal tax account: sign in or set up," <https://www.gov.uk/personal-tax-account>, 검색일자: 2025. 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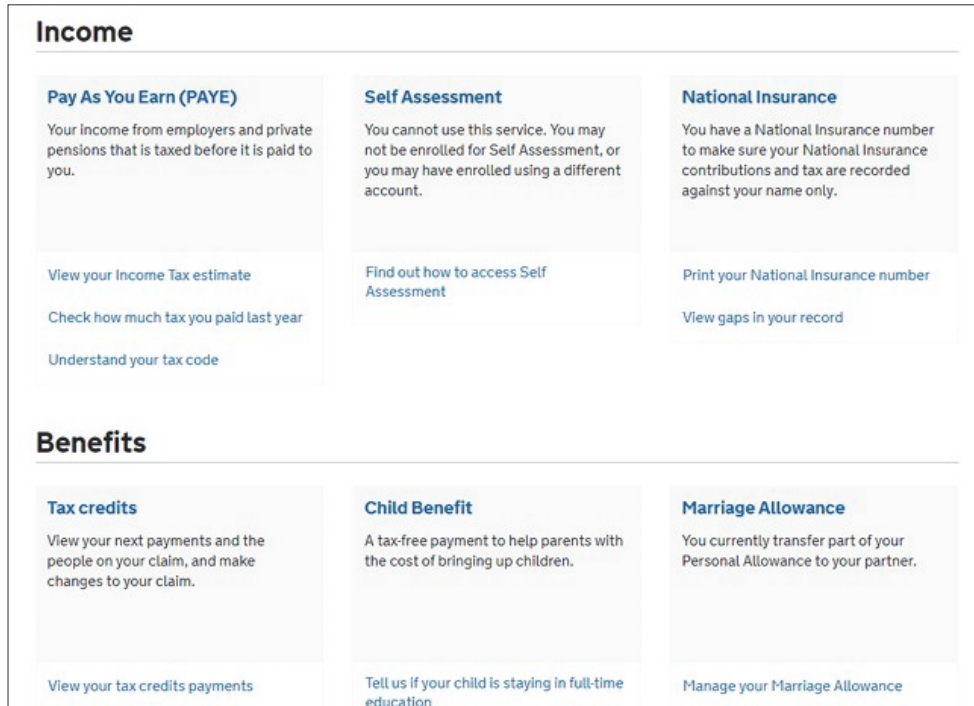
- PTA에 접근하려면 정부 게이트웨이(Government Gateway)를 통해 등록해야 함⁸⁶⁾
 - (등록에 필요한 자료) NIC 번호,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신원 증명에 필요한 자료) 은행 계좌 정보, P60, 최근 3개월간 급여 명세서, 여권 (이름, 번호, 유효 기간)
-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소득자는 직접 HMRC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소득세 추정치와 세금 코드, 자체 평가 세금 신고서, 세금 환급 청구, 자녀 수당, 지난 5년간의 근로소득,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 NIC, 결혼 공제 확인 및 업데이트, 이름이나 주소 변경 사항 통보 등
-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인소득세 온라인 서비스(Income Tax online service)’⁸⁷⁾를 이용하면 됨
 - 고용의 세부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
 - 세금 코드를 변경할 수 있음
 - 예상 과세소득을 업데이트할 수 있음
 -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회사로부터 받는 과세 대상 복리후생 자료를 추가할 수 있음

85) taxvol(TAX HELP FOR OLDER PEOPLE), “Accessing your Personal Tax Account: step by step instructions,” 2018. 6. 1.

86) HMRC, “Use a Government Gateway user I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cess-our-services-using-government-gateway/use-a-government-gateway-account>, 검색일자: 2025. 6. 19.

87) HMRC, “How to update your tax code,” <https://www.gov.uk/tax-codes/how-to-update-your-tax-code>, 검색일자: 2025. 6. 19.

[그림 III-1] 영국의 개인 세금 계정(PTA) 메뉴



자료: taxvol(TAX HELP FOR OLDER PEOPLE), "Accessing your Personal Tax Account: step by step instructions", 2018. 6. 1., p. 10.

3) 소득자료 연계

- 영국은 2013년,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s, UC) 제도를 도입함⁸⁸⁾
 -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는 근로연령층(16~64세)을 대상으로 하는 6개의 사회부조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화한 것임
 - 소득보조(income support), 소득기반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소득연계 고용 및 지원수당(income-related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자녀세액공제(child tax

88) REVENUEBENEFITS, "Universal credit: Guidance," <https://revenuebenefits.org.uk/universal-credit/guidance/>, 검색일자: 2025. 6. 19.

credit)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등 기존의 다양한 조세 혜택과 사회부조 급여를 하나로 통합함

- 유니버설 크레딧은 2013년 3월, 영국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었고 2016년 4월부터 영국 내 모든 구직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8년 12월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됨
 - 노동연금부(DWP)에서 운영 및 관리함
 - 북아일랜드는 지역사회부(Department for Communities)에서 운영 및 관리함
- PAYE에 보고되는 소득정보는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 UC) 제도 운영을 위해 DWP로 공유되고 있음⁸⁹⁾
- HMRC는 DWP에 소득정보를 공유해야 함
 - DWP는 HMRC의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음
 - 소득정보는 매일 8시, 11시, 13시 30분, 4시에 HMRC에서 DWP로 4회 전송되며 DWP의 데이터베이스인 RTE(Real Time Earnings)에 저장됨
 - HMRC는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본을 DWP에 전송함
- DWP는 HMRC로부터 받은 실시간 소득정보로 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산정함⁹⁰⁾
- 지급 금액은 개인의 상황과 평가 기간(assessment periods) 동안의 순 급여(net pay)를 기준으로 결정됨
 - 대부분은 순 급여(net pay)는 실수령액(take home)⁹¹⁾과 동일함
 - 순 급여(net pay) 정보는 HMRC로부터 공유받고 있음
 - 평가 기간은 HMRC에서 받는 급여 지급일 정보를 조합하여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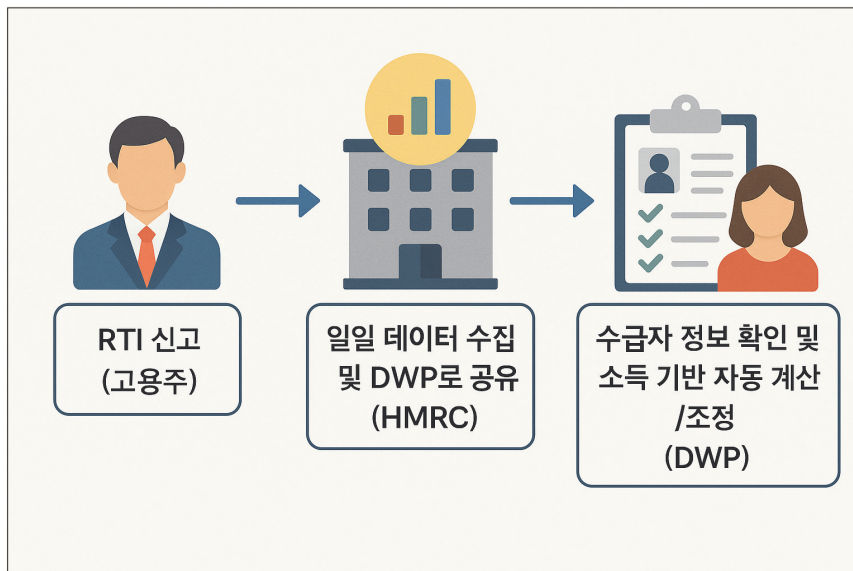
89) 김나리 외, 「더 효율적인 빈곤정책의 역설: 영국의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3권 제2호, 2023. 6., p. 54.

90) REVENUEBENEFITS, “Universal credit: RTI and Universal Credit,” 2025. 5. 11., <https://revenuebenefits.org.uk/universal-credit/guidance/entitlement-to-uc/rti-and-universal-credit>, 검색일자: 2025. 6. 26.

91) 실수령액은 세금, NIC, 특정 연금기여금 등을 공제한 후 지급되는 급여

- DWP는 일반적으로 실제 급여 지급일에 HMRC로부터 소득정보를 받게 됨
- 평가 기간 동안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은 0으로 간주됨
- 평가 기간은 변경할 수 없음
- 평가 기간, 소득정보 등 이의가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주가 소득정보를 늦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 유니버설 크레딧 계정을 통해 DWP에 연락하거나 유니버설 크레딧 헬프라인으로 전화하여 DWP에 문의해야 함
 - 소득정보가 잘못 보고된 경우, 실제로 소득을 받은 평가 기간으로 해당 금액을 재할당할 수 있음
 - DWP는 소득정보 불일치 등을 조사하는 RTI 분쟁팀을 운영하고 있음
- 유니버설 크레딧은 월별 지급 방식임
 - 실시간 소득정보로 파악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경우 소득정보를 직접 DWP로 보고해야 하고 추가적인 신고서 작성이 필요함

[그림 III-2] 영국의 HMRC와 DWP 간 소득정보 공유



자료: AI(Chat GPT)를 활용하여 이미지화함

나. 일본(API)

- 일본에서는 세무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12월 공공행정의 디지털화 노력을 명시한 ‘디지털 정부 행동계획’을 승인함⁹²⁾
-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영국과 같은 실시간 소득과약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으나, 일부 부처 간 마이넘버를 기반으로 세금, 사회보험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1) 신고의무⁹³⁾⁹⁴⁾

- 일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급여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퇴직수당), 기타소득(일정 전문가에 대한 보수) 등임⁹⁵⁾
-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우리나라와 유사함
 - 급여 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국세청) 및 이전 신고(지방자치단체)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액 납부(월별) → 원천징수표 교부(연 1회) → 과세연도 다음 해에 연말조정 제출(연 1회)
 -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급여 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직원이 거주(reside)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를 위한 ‘이전 신고서(Notification of Transfer of Salaried Workers for Special Collection)’를 제출해야 함

92) NTA(일본 국세청), 「納税者サービスの充実と行政効率化のための取組」, https://www.nta.go.jp/about/introduction/torikumi/report/2020/02_6.htm, 검색일자: 2025. 6. 26.

93) NTA(일본 국세청), 「令和7年版 源泉徴収のしかた」,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shikata_r07/01.htm, 검색일자: 2025. 6. 26.

94)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4,” 2024. 1. 26., pp. 214~220.

95) IBFD, “Japan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Individual Income Tax(Last Reviewed: 28 January 202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stic/ita_jp_s_1.10.3.%23ita_jp_s_1.10.3., 검색일자: 2025. 6. 26.

- 우리나라의 간이 지급명세서처럼 연간이 아닌 월별 등 적시에 소득자별 소득정보를 보고하는 제도 유무는 확인되지 않음
-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불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사업자는 연 2회 납부할 수 있는 ‘원천 소득세의 납기 특례’를 두고 있음⁹⁶⁾
 -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연 2회(7월 10일까지, 1월 20일까지) 6개월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⁹⁷⁾는 e-Tax, 금융기관, 관할 세무서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연도 마지막 급여 지급 월인 12월에 연간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조정’을 하고 연간 원천징수세 보고서 등의 법정 조서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10~12월에 근로자로부터 연말조정에 필요한 각종 공제 신고서를 받아 연말조정을 수행함
 - 근로자는 부양공제 등 신고서, 기초공제신고서, 보험료 공제신고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집한 자료로 연말조정을 수행하고 과납액과 부족액을 파악함
 - 연말조정 후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게 법정 조서를 제출하고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표를 교부함
 - 조정된 원천징수 세액은 익년 1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연말조정의 법정 조서는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96) 일본 「소득세법」 제2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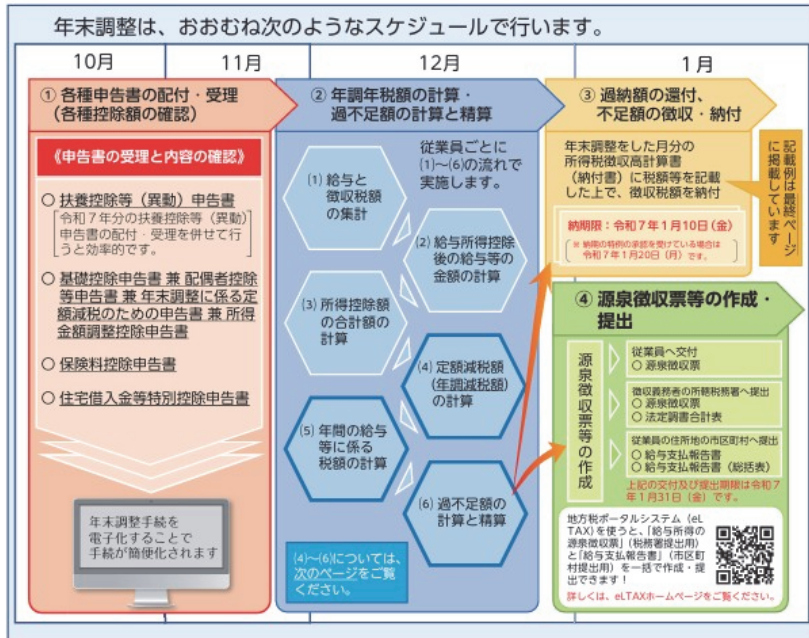
97) 동일본 대지진 후 피해 복구와 부흥을 위해 한시적으로(2013~2037년) 부과하는 소득세의 추가 세금임

〈표 Ⅲ-2〉 일본의 원천징수 및 연말조정 사무

| 사무 내용 | | 사용하는 세액표나 신고서 등 |
|-------|-------------------------|--|
| 원천징수 | ① 공제 대상 배우자, 친족 등 확인 |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이전 신고서 |
| | ②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세액표(일액표 및 일액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산출율의 표 |
| | ③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기록 |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 |
| | ④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징수계산서(납부서) |
| 연말조정 | ① 공제액 확인 | 보험료 공제 신고서, 배우자 공제 등 신고서, 기본공제 신고서,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신고서, 소득금액 조정 공제 신고서 등 |
| | ② 연말조정에 의한 과부족액 정산 및 납부 | 연말조정 등을 위한 소득공제 후의 금액의 표, 산출 소득세액의 속산표, 원천징수부, 소득세 징수계산서 등 |
| | ③ 원천징수표의 교부와 세무서 제출 |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

자료: NTA(일본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용 리플릿(源泉徴収義務者の方用リーフレット)」, <https://www.nta.go.jp/users/gensen/nencho/index/gimusya.htm#a005>, 검색일자: 2025. 6. 26.

〔그림 Ⅲ-3〕 일본의 연말조정 일정



자료: NTA(일본 국세청), 「원천징수 의무자용 리플릿(源泉徴収義務者の方用リーフレット)」, p. 2, <https://www.nta.go.jp/users/gensen/nencho/index/gimusya.htm#a005>, 검색일자: 2025. 6. 26.

- 근로자와 관련한 사회보험신고는 국민연금은 일본연금기구, 건강보험은 일본연금기구 또는 건강보험조합, 고용보험은 공공직업안정소, 산재보험은 노동기준감독서로 각각 신고함
- 일본연금기구(Japan Pension Service)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징수함⁹⁸⁾
 - 해당 보험료 금액은 피보험자의 자격 변경, 분실, 표준 월 보수, 보너스 지급 등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제출한 신고내용을 토대로 일본연금기구에서 매월 20일경에 사업장으로 '보험료 납부 통지서'를 보내 고지함
 - 일본연금기구에서 통지한 납부서를 토대로 피보험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를 고용자부담분과 함께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함
 - 고용주는 매년 7월 월별납부서의 산정자료가 되는 정기결정(산정기초신고)을 함⁹⁹⁾
 - 고용주는 정기결정 외에도 근로자의 입·퇴사, 급여액 변동, 휴직 등 수시개정(변경신고)을 해야 함
 - 고용주는 사회보험신고를 전자프로그램, 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¹⁰⁰⁾
- 일본의 개인 소득에 대한 지방세는 주민세가 있는데, 급여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천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전년도에 과세소득이 있었고 1월 1일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은 주민세를 납부할 자격이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총 과세소득의 약 10%인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고 연말 소득에 대한 세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정보(급여 지급 보고서)를 소득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함

98) Japan Pension Service, 「厚生年金保険料等の納付」, <https://www.nenkin.go.jp/service/kouunen/hokenryo/nofu/nofu.html>, 검색일자: 2025. 6. 26.

99) 국세청,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p. 136.

100) Japan Pension Service, 「事業主の方 社会保険事務担当の方」, <https://www.nenkin.go.jp/service/riyoushabetsu/jigyonushi/index.html>, 검색일자: 2025. 6. 26.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통지 및 납부서를 보냄
- 일본의 고용주는 「노동기준법」 제10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구비해야 함
 - 근로자의 임금 산정의 근거, 금액 및 후생노동성 조례가 정한 기타 사항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함
 - 성별, 임금계산 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초과근무, 휴일근무, 심야근무인 경우) 연장근로시간, 기본급여 등 각 임금유형별 급여내역, 공제금액 등을 임금대장에 기록해야 함¹⁰¹⁾
 - 고용주는 임금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함¹⁰²⁾
 - 보관 의무기간은 '5년'(제109조)이지만, 과도기적 조치로서 보충 조항에 따라 당분간 3년임(제143조)
 -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¹⁰³⁾
-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채용한 고용주는 임금 등과 관련한 노동조건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기준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임금 관련 분쟁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행정시스템

- (제도의 특징) 일본 과세당국인 NTA(National Tax Administration)는 디지털 정부 행동계획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직원의 고용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보험 및 세금신고를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포털 API제도를 도입함¹⁰⁴⁾

101)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시행규정」 제54조 제1항

102)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제109조 및 제143조

103)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제120조

104) 마이너포털API, 「社会保険・税手続申請API とは」, <https://myna.go.jp/html/api/tetsuzukishi>

- 마이너포털 API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뿐 아니라 광범위한 행정정보와 민간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주고 있음
 - 정보 연계와 더불어 마이너포털에서 전자신고나 전자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도 존재함
- 국세청과 사회보험기관의 일부 업무를 마이너포털 API에서 수행할 수 있음¹⁰⁵⁾¹⁰⁶⁾
 - 마이너 포털의 '외부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마이넘버 카드로 마이너포털에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국세청의 메시지 박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에 납세 증명서, 원천 소득세, 법정 조서 등에 관한 신고 등을 할 수 있음
 - '국세전자신고·납세시스템(e-Tax)'는 마이너포털의 「더 연결」 기능을 이용해 e-Tax와 제휴하는 것으로, 이용자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e-Tax에 로그인해 메시지 박스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마이너포털 등 연계 플랫폼'은 이용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 조정의 신청을 위해 마이너포털 경유로 생명 보험료 공제 증명서나 의료비 통지 정보 등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등의 데이터를 일괄로 취득하는 서비스임
 - '공매 전자 입찰'은 공매 참가자가 공매 물건에 대한 입찰, 필요 서류의 제출, 최고가 신청자가 된 경우의 납부 방법·수취 방법의 회답 등에 대해서 공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임
 - 'iDeCo 온라인 수속 서비스'는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 가입자, '국민연금 기금 온라인 수속 서비스'는 국민연금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말 조정 및 확정 신고를 전자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기업연금연합회 온라인 절차 서비스'는 기업연금연합회가 지급하고 있는 연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를 전자적으로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표의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nsei/index.html, 검색일자: 2025. 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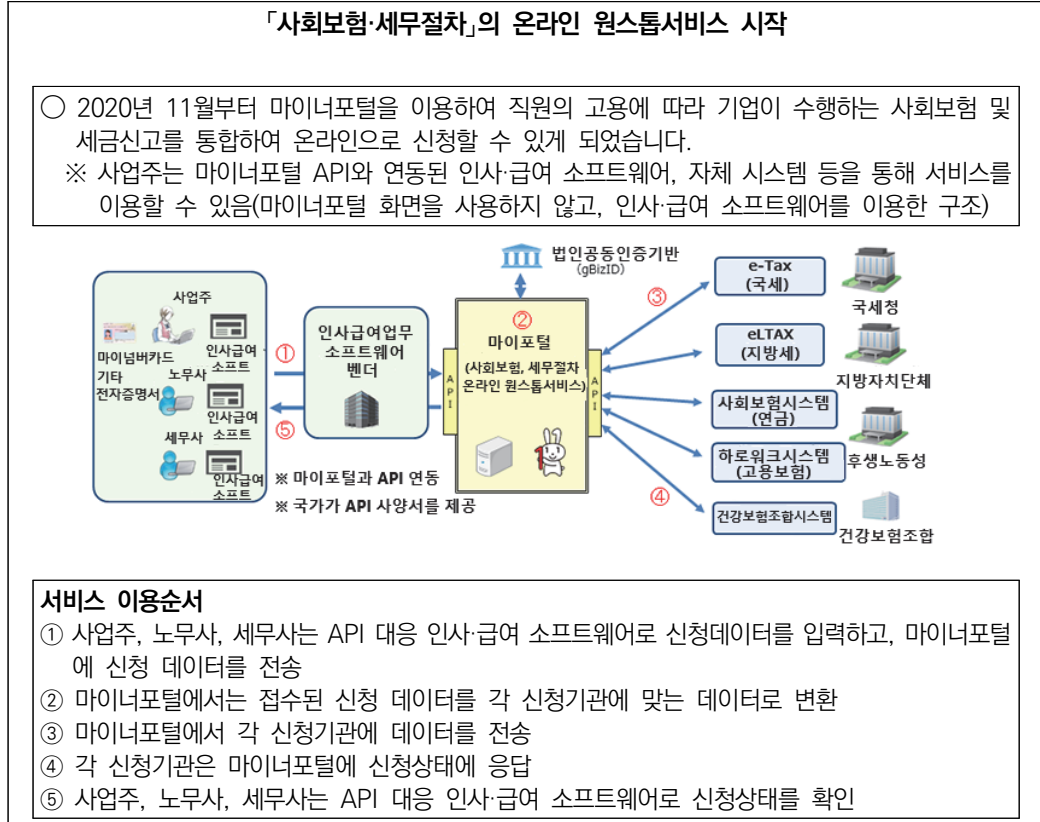
105) E-TAX, 「マイナポータルの「外部サイトとの連携」機能についてよくある質問」, <https://www.e-tax.nta.go.jp/toiawase/qa/mynportal/01.htm>, 검색일자: 2025. 6. 26.

106) 마이너포털API, 「マイナポータルAPIの活用事業者一覧」, https://myna.go.jp/html/api/provide_rlist.html, 검색일자: 2025. 6. 26.

- 마이너포털의 「사회보험·세무절차」의 온라인 원스톱서비스¹⁰⁷⁾는 직원의 고용에 따라 기업이 수행하는 사회보험 및 세금 신고를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임
 - ‘계좌 등록·이용자 인증’, ‘신청·조회’, ‘정정·탈퇴’ 기능을 제공하며, 마이넘버 카드나 각종 전자 증명서를 이용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업 공통 인증 플랫폼인 G-Biz ID를 이용한 인증도 지원하며, 인증 방식(디지털 인증서 또는 기업 공통 인증 플랫폼)별로 상이한 인증 API를 제공함
 - (등록) API 이용 신청자가 API 이용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이너포털 API 사양 공개사이트에서 이용약관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확인·동의한 후, 사양서 신청 화면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해당 서비스 정보를 디지털 PMO에 등록해야 함
 - 사회보험 및 세무절차 애플리케이션 API는 마이너포털이 제공하는 API 중 하나로 민간 웹 서비스가 사회보험 및 세무 관련 절차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음
 - (근로자 수행절차) 근로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e-Tax와 마이너포털을 연계하고 e-Tax 마이페이지에서 정보 조회 희망 등록 및 마이넘버 등을 제공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 e-Tax로 신고¹⁰⁷⁾
 - (자동입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신고하는 자(“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마이넘버 및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그리고 지급자의 마이넘버 또는 법인번호 등을 제외한 정보가 연계대상이며, 확정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자동입력 대상이 됨
 - (적용시기) 2024년 2월부터는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표만 연계대상이 되며, 2027년 2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 데이터에도 연계될 예정

107) 일본 국세청(NTA), 「事業者が提出する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mynumberinfo/pdf/0023009-042.pdf>, 검색일자: 2025. 6. 26.

[그림 III-4] 일본의 마이너포털 API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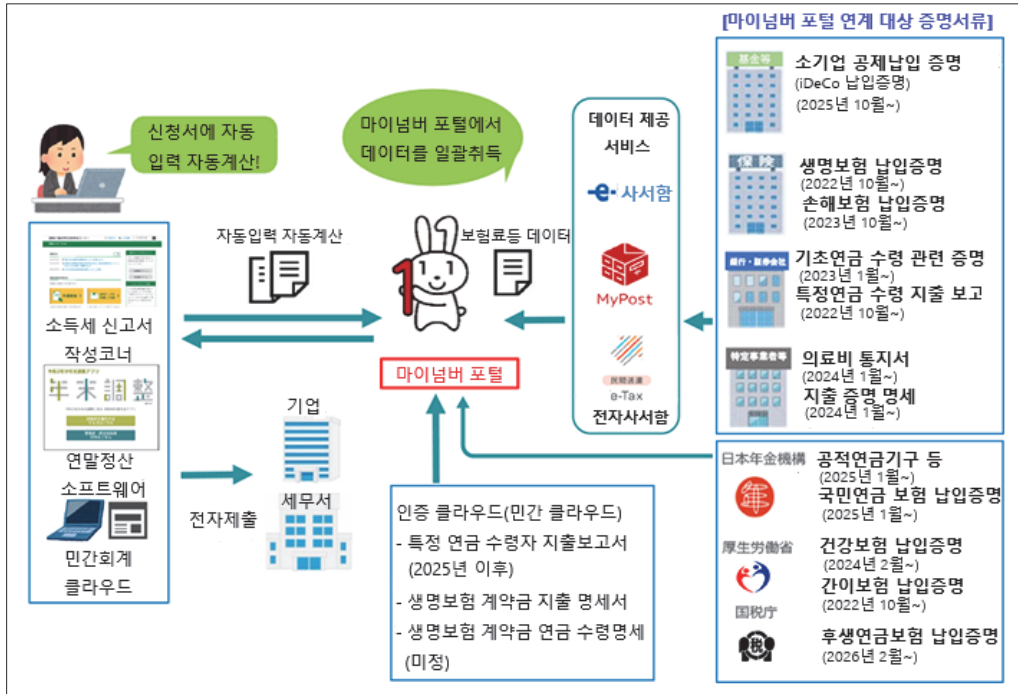
자료: 마이너포털API仕様公開サイト, 「社会保険・税手続申請APIとは」, <https://myrna.go.jp/html/api/tetsuzukishinsei/index.html>, 검색일자: 2025. 6. 26.

- (원천징수·신고) 고용주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납세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이너포털 연동을 통해 지급명세서의 해당 항목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e-Tax로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¹⁰⁸⁾
- (제출범위) 연간 총 지급액이 5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온라인 제출 시 자동입력 대상에 해당

108) 일본 국세청(NTA), 「事業者が提出する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mynumberinfo/pdf/0023009-042.pdf>, 검색일자: 2025. 6. 26.

- (제출방법) 온라인(e-tax, 인증 클라우드 등, 지방세 포털시스템(eLTAX)의 “전자 제출 일원화 기능”을 통해 제출되어야 함
 - (입력항목) 근로자의 마이넘버, 성명(가타카나 포함), 주소, 생년월일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함
- (연말정산) “마이너포털 연계”는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표, 소득세 신고서 등의 절차에서 마이너포털을 통한 공제 증명서 등의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획득하여 최종 세금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자동으로 입력함

[그림 Ⅲ-5] 일본의 마이너포털과의 연결 구조



자료: 일본 국세청(國稅廳) 마이너 포털과의 연계를 위한 페이지,「マイナポータル連携特設ページ」, <https://www.nta.go.jp/taxes/tetsuzuki/mynumberinfo/mynapo.htm>, 검색일자: 2025. 6. 26.

□ (신고의무 통합) 일본의 마이너포털 API 시스템은 신고의무 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완전한 의미의 통합으로 볼 수 없음

-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이를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며, 민간 기업도 API를 이용해 개인의 행정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마이너포털 API 시스템은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API 기반의 자동화된 정보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신고의무 통합 실현 사례에 해당함
-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필요로 하며, 아직 모든 행정기관 및 민간 플랫폼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됨

다. 비교

1) 우리나라와 영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비교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지급에 대해 「국세법」, 「지방세법」, 「사회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행정 처리 절차가 복잡한 반면, 영국의 경우 간소한 편임
 - (우리나라) 국세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4대 사회보험의 취득 상실신고 등 다양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영국) 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 견습세 신고를 해야 함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지방세로 과세되는 세목은 확인되지 않음
-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해 우리나라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를 두고 있고 영국은 2013 년도에 원천징수 제도를 혁신하여 실시간으로 소득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간이 지급명세서는 월별(상용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 단위로 소득정보를 제출하므로 소득정보 수집에 시차가 발생함
 - (영국) HMRC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소득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전자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소프트웨어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고 영국은 HMRC가 인증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 자기 개발업체와 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위해 전산매체제출요령을 개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안내함
 - (영국) 무료 소프트웨어와 유료 소프트웨어가 있음¹⁰⁹⁾
 -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급여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함
 -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경우 FPS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됨

- 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별로 관리되고 영국은 PAYE 시스템으로 일원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 원천징수된 소득세, 법인세는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은 위택스 등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관리함
 - (영국) 소득세, 견습세, NIC 등을 PAYE 시스템을 통해 납부 관리함
 - 소득세, NIC 등은 FPS, 견습세 등은 EPS를 통해 관리됨

- 소득세 정산을 위해 우리나라는 간이 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영국은 과세연도 중 실시간으로 정산하고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음
 - (우리나라) 연 1회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산하고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 의무가 있어 소득세 정산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해야 함
 - (영국)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는 소득자별로 신고된 세금코드(tax code)를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산 가능하여 과세연도 중에도 정확한 세금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음
 - HMRC는 연간 FPS의 세금과 최종 세金的 차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직접 P800을 발송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함

109) HMRC, "Find payroll software," <https://www.gov.uk/payroll-software>, 검색일자: 2025. 6. 26.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으로 보고한 소득정보는 양국 모두 소득자가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득자는 홈택스의 '소득내역확인' 메뉴를 통해 간이 지급명세서로 제출된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지급금액,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에 요청해야 함
 - (영국) 소득자는 HMRC의 '개인 세금 계정(PTA)'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지급금액,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 원천징수세액, NIC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인적사항, 세금코드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기관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정보를 기관별로 연계해야 하고 영국은 과세정보를 노동연금부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 부분적으로 과세정보를 연계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 - 연말정산) 국세청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로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간이 지급명세서 자료 제공을 추진함¹¹⁰⁾
 - (건강보험공단 - 소득 조정제도) 건강보험공단은 당해 연도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으로 산정) 가입자가 소득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¹¹¹⁾을 추진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 - 소득정보관리시스템) 국세청은 소득자의 소득정보를 실시간 수집 및 통합 관리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연계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¹¹²⁾ 간이 지급명세서 등 소득 관련

110) 납세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청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공단에 보수충액통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개정 전) 보수충액신고(3월) → 보험료 부과(4월) → 국세청 연간 지급명세서 연계 및 정산(9월)
 (개정 후) 보수충액신고(x)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및 보험료 정산(4월) → 국세청 연간 지급명세서 연계 및 정산(9월)

111)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정 신청 시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증빙서류로 대체하여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112)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은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 세금계산서 관리

자료를 전용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영국) 노동연금부(DWP)의 유니버셜 크레딧 운영을 위해 HMRC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정보를 매일 8시, 11시, 13시 30분, 16시에 DWP로 전송하며, DWP의 데이터베이스인 RTE(Real Time Earnings)에 저장됨
 - 수당 수급자 판단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순 급여(net pay)인데, HMRC에서 전송받은 소득정보와 순 급여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함

〈표 III -3〉 우리나라와 영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비교

| 구분 | | 우리나라 | 영국 |
|----------------|--------|---|--|
| 소득 지급에 대한 신고의무 | 국세 |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 | PAYE, 견습세 |
| | 지방세 등 |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4대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 |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 |
| 실시간 소득파악 | 제도 | 간이 지급명세서 | PAYE |
| | 제출주기 | 월별(상용 근로소득은 반기별) | 실시간 |
| 신고 방식 | | 전자신고, 서면신고 | HMRC가 인증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송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인 Basic PAYE Tool(BPT) 배포) |
| 납부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된 소득세, 법인세는 홈택스 등을 통해 납부 관리 ·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관리 ·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 관리함 | 소득세, 견습세, NIC 등 PAYE 시스템을 통해 납부 관리 |
| 소득세 정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연간 지급명세서를 통해 정산 · (단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 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 정산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자별 세금코드(tax code)를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등이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실시간으로 정산 · HMRC는 FPS의 세금과 최종 세금의 차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직접 P800을 발송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함 |
| 소득자의 소득정보 | 소득자 확인 | '소득내역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개인 세금 계정(PTA)'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 |
| | 확인사항 | 지급금액, 소득자 인적사항 | 지급금액, 소득자 인적사항, 원천징수 세액, NIC 관련 정보 등 |
| 과세정보 연계 | 정보 수정 | 국세청이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 | 인적사항, 세금코드 등 소득자가 직접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
| |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득조정 제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 (근로복지공단) '소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금부(DWP)의 유니버셜 크레딧 운영을 위해 HMRC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정보"를 매일 8시, 11시, 13시 30분, 4시에 전송하며 DWP의 데이터베이스인 RTE(Real Time Earnings)에 저장됨 |

주: 1) 수당 수급자를 판단할 때 소득기준은 순 급여(net pay)인데, HMRC에서 전송받은 소득정보와 대부분 일치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시스템 비교

-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득과약 제도는 유사함
 - 우리나라는 국세와 관련하여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을 신고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각종 신고서(취득·상실신고 등)를 제출해야 함
 - 일본도 국세와 관련하여 원천세와 연말 조정이 있고 지방세와 관련하여 주민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기관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우리나라의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와 같은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는 확인되지 않음
 - 양국 모두 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정산 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조세와 사회보험의 신고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확인되지 않음
 - 국세청은 ‘소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소득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조세와 사회보험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신고의무를 하나의 신고로 대체하는 경우는 있음
 - 조세의 지급명세서와 사회보험의 연간 총액 신고 등

- 일본의 경우 행정정보의 연계와 통합을 위해 디지털청이 ‘마이너포털 API’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플랫폼을 통해 조세와 사회보험의 일부 신고정보를 연계하고 있음
 - ‘사회보험·세무절차’의 온라인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회보험과 세금신고를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음
 - 신청데이터를 입력하여 인증된 소프트웨어로 마이너포털에 데이터를 전송함
 - 마이너포털에서는 데이터를 각 신청기관에 맞는 데이터로 변환하고 각 신청기관

에 데이터를 전송함

- 이용자와 신청기관은 마이너포털에 신청상태를 관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함

〈표 Ⅲ-4〉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시스템 비교

| 구분 | | 우리나라 | 일본 |
|----------------|-------|--|-------------------------------------|
| 소득 지급에 대한 신고의무 | 국세 | 원천세, 간이 지급명세서, 연간 지급명세서 | 원천세, 연말조정 |
| | 지방세 등 |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4대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 | 주민세,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 |
| 실시간 소득과약 | 제도 | 간이 지급명세서 | X |
| | 제출주기 | 월별(상용 근로소득은 반기별) | |
| 조세-사회보험 연계 시스템 | 시스템 | 국세청의 소득정보관리시스템 | 디지털청의 마이너포털 API |
| | 기능 | 소득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 세금신고 및 사회보험을 마이너포털 API를 통해 윈스톱으로 신고 |
| | 특징 | 국세청 주도하에 정보 공유 |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과세정보 공유 사례

가. 미국

□ (역사) 미국에서는 닉슨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세금 신고정보를 부적절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조세정보의 공개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그 이후 납세자정보를 세무행정상의 목적 이외에도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어 197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의 일환으로 제6103조가 제정됨¹¹³⁾

- (법률규정) 미국의 조세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연방법인 「내국세입법」 제6103조 (Internal Revenue Code §6103)에서 다루고 있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납세자번호(SSN 또는 ITIN)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다만 동법 ㉔항에서 ㉔항까지에서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에 대해 열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⁴⁾
 -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조세행정 목적을 위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개,¹¹⁵⁾ 조세행정 목적 이외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개,¹¹⁶⁾ 행정기관이 사회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¹¹⁷⁾에 한정하여 허용됨
 - ㉕항) 각 행정기관의 장관이 조세나 재정법이 아닌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나 직무 수행을 위해 IRS에 대해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조세행정 관련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과세정보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㉖항) 조세행정 목적 이외에 연방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지만, 사법 및 행정 절차 상 일방당사자만 참가하여 법원이 내린 명령에 따르는 경우, 조세법이나 연방법상 범죄행위 및 테러활동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경우, 사법 및 행정절차의 준비나 조사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 사용 목적만 공개를 허용함
 - ㉗항) IRS가 납세자의 책임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료 납부의무에 관련된 정보를 사회보장국(SSA)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이유로 세금 신고정보를 SSA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113) 위찬필, 「과세정보 활용과 비밀유지 의무와의 조화방안」, 국세청, 2019. 11.

114) IRS, "Disclosure laws," <https://www.irs.gov/government-entities/federal-state-local-governments/disclosure-laws>, 검색일자: 2025. 6. 26.

115) IRC section 6103 ㉕

116) IRC section 6103 ㉖

117) IRC section 6103 ㉗

- (행정기관 간 조세정보 공유) 앞에서 언급된 근거규정 이외에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은 없음¹¹⁸⁾
- 다만 IRS는 ㉞항 14를 근거로 연방·주·지방의 정부기관들과 정보공유프로그램(Information Sharing Programs)과 안전보장조치 프로그램(Safeguards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IRS 산하 정부연락연구소(Office of Governmental Liaison)는 연방·주·지방의 조세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들과 조세행정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과세정보를 공유함
 - 또한 안전보장조치사무소(Office of Safeguards)는 ㉞항 4를 근거로 정부기관에 제공되는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하여 조세체계의 완전성에 대한 납세자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를 수취하는 정부기관, 대리인이나 계약업체가 과세정보의 비밀을 적절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연방·주·지방 정부기관에 대한 조세 정보보안 지침을 마련함

〈표 Ⅲ-5〉 미국의 내국세입법 제6103조

| 하위조항 | 세부내용 | 구분 |
|------|---|------|
| ㉞ | 과세정보 비밀주의 원칙 명시 | 일반규정 |
| ㉟ | 관련 용어의 정의 | |
| ㊱ | 특정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납세자가 지명하는 자 또는 정보주체인 납세자가 과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자에 대한 공개 | 예외규정 |
| ㊲ | 주정부 세무공무원 및 지방정부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 |
| ㊳ | 실질적 이해관계인(합명회사의 공우 각 동업자, 회사의 경우 지분보유비율 1%이상 주주)에 대한 공개 | |
| ㊴ | 의회의 해당 위원회에 대한 공개 | |
| ㊵ | 대통령(그가 지정한 백악관 직원), 기타 연방정부기관의 수장, 연방수사국(FBI)이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한 경우 | |
| ㊶ | 조세행정 목적을 위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개 | |
| ㊷ | 조세행정 목적 이외에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개 | |
| ㊸ | 통계 이용을 목적으로 상무부나 연방무역위원회 등에 대한 공개 | |

118) 최창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법제연구』 제57호, 2019. 12., p. 116~117.

〈표 Ⅲ-5〉의 계속

| 하위조항 | 세부내용 | 구분 |
|------|---|------|
| ㉔ | 조세행정 목적을 위한 특정 과세정보의 공개(조세채무 집행을 위해 담보제공자에게 조세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조세채무 관련 과세정보를 담보 제공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 | |
| ① | 조세행정 이외의 목적을 위한 공개(행정기관이 사회보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등) | |
| ㉓ | 납세자의 신상정보 공개(환급대상자의 주소지 불분명, 환급사실 고지를 위해 환급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언론매체나 정부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 |
| ㉒ | 조세행정 목적을 위한 제3자에 대한 공개(과세정보의 제공, 저장, 전달, 재생, 장비의 프로그래밍, 유지보수, 점검 등) | |
| ㉑ | 특정 조세와 관련된 공개(알코올, 담배, 무기 관련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에 대한 공개) | |
| ㉐ | 과세정보 조사나 공개에 대한 요청, 이러한 조사나 공개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 및 기록보관방식을 규정함 | 일반규정 |
| ㉏ | 재무부 장관 규칙 제정권을 명시 | |

자료: 최창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법제연구』 제57호, 2019. 12., p. 116~117.

□ (구조적 특징) 미국은 다양한 행정기관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3단계로 분권화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기관이 상이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외부기관과의 공유문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행정 데이터의 공유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법령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산업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내용의 법령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음¹¹⁹⁾
- 미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단일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으므로, 행정 데이터의 공유와 중앙집권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법 조치가 요구됨¹²⁰⁾

119) 최창수, 「미국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조(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제68권 제3호, 2019, pp. 478~510.

□ (검토 지침) 외부기관에서 정보제공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IRC 6103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는 이를 위한 검토 지침¹²¹⁾을 마련¹²²⁾

○ (정보공개 사유 판단과정)

- (1단계) 납세자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요청되었으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확한가?
- (2단계) 정보요청은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고 이루어졌는가?
- (3단계)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에 정확하고 충분하며 시의적절한가?
- (4단계)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가?
- (5단계) 해당 정보제공 요청이 다른 법적, 논리적 문제점은 없는가?

○ (정책적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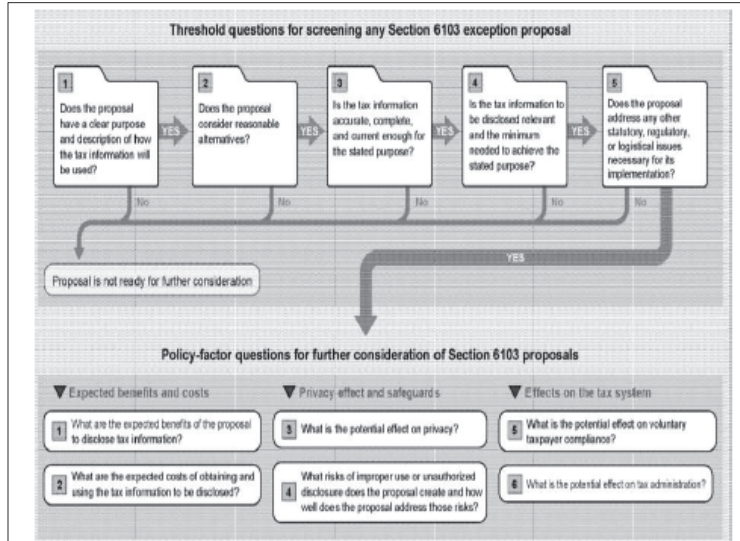
- (1단계)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에는 무엇이 있는가?
- (2단계)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측의 전체적인 비용 및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3단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였는가?
- (4단계) 해당 정보제공 요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정보유출의 위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 (5단계) 해당 정보제공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6단계) 해당 정보제공이 조세행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는 무엇인가?

120) 시송(Xi Song)·토머스콜먼(Thomas S. Coleman), 「미국의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가을호 Vol.14, 2020. 9., pp. 5~15.

121) GAO, "TAXPAYER PRIVACY - A Guide For Screening and Assessing Proposals to Disclose Confidential Tax Information to Specific Parties for Specific Purposes," 2011. 12.

122) 위찬필, 「과세정보 활용과 비밀유지 의무와의 조화방안」, 국세청 연구보고서, 2019. 11., pp. 85~88.

[그림 III-6] 미국의 GAO 검토매뉴얼



자료: GAO, “TAXPAYER PRIVACY - A Guide For Screening and Assessing Proposals to Disclose Confidential Tax Information to Specific Parties for Specific Purposes,” 2011. 12.

- (행정정보 통합) 미국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여 식별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비식별화 데이터를 통한 행정 빅데이터의 연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은 2019년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행정기관과 연구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이 법은 각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산하고 이 자료에 행정기관과 연구자의 접근이 쉽도록 조치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면서도 대중에게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음
- 또한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이 인구동태 신고사항, 인구조사정보, 세금징수(IRS), 주 실업보험, 퇴직자 연금(미국 사회보장국(SSA)의 임금 및 연봉기록), 의료

혜택 범위(메디케어·메디케이드(CMS) 서비스센터), 교육 등과 같은 행정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함

- 이에 따라 IRS의 행정자료와 센서스국의 서베이 자료인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또 다른 서베이 자료인 소득과 프로그램 참여조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미국공동체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인 전 인구에 대하여 자녀 및 고용주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세한 과세 자료 패널 데이터인 SOI Databank(IRS의 소득 통계프로그램)와 조세와 복지 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조세-급여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나. 스웨덴

- (역사) 스웨덴은 18세기 말 이전에는 봉건주의적 잔재가 공존하는 전형적인 부패국이었으나, 1766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 법인 「출판언론자유법(Freedom of Act)」을 성문화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를 「공공공개법」으로 발전시켜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관료제 성립의 기틀을 마련함¹²³⁾
- (법률규정) 스웨덴의 조세정보는 「비밀보호법(The Secrecy Act)」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결정에 대한 부분(총수입 규모, 소득공제, 소득금액, 결정세액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행정기관 간 조세정보 공유) 스웨덴에서는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조세정보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활발하게 공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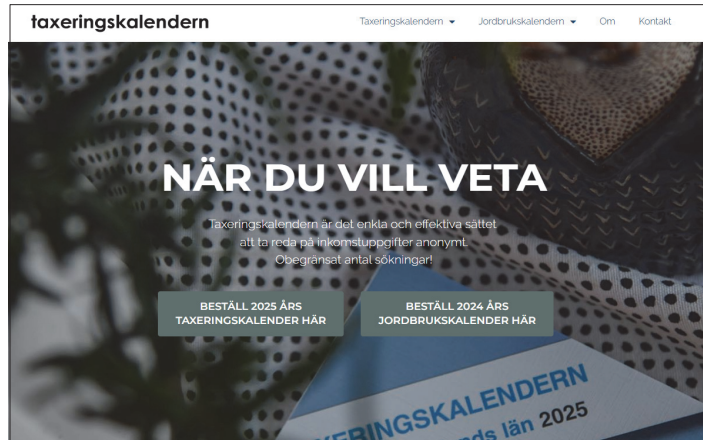
123) 국민권익위원회, 「스웨덴의 반부패시스템 성공 원인」, <https://www.acrc.go.kr/briefs/201707/sub3.html>, 검색일자: 2025. 6. 26.

- 국가기관인 ‘국가 개인 주소 등록청(SPAR)’은 국세청으로부터 인구 등록정보를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공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 역시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기관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음
- 매년 납세자들의 소득규모, 자산규모 등의 정보가 포함된 “Taxeringskalendern(Tax calender)”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며, 인터넷¹²⁴⁾을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되고 있음
 - Taxeringskalendern은 알파벳 순으로 개인의 이름, 주소와 함께 근로소득(earned income), 불로소득(earned income), 결정세액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소득과 결정세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전화를 통해서도 타인의 조세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허용됨
- (구조적 특징)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스웨덴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함으로써 어떤 정보라도 투명하게 공유되고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 유럽연합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특징이 있음
- 유럽연합 국가에서는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정보보호규제법(Dataskyddsförordning, GDPR)」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 조항 제17조에는 잊혀질 권리가 명시되어 개인이 정보 삭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들의 정보를 다루는 자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개인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음
- 스웨덴 헌법¹²⁵⁾ 중 출판자유법에서 공문서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포괄적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간 회사들이 국가로부터 ‘출판권’을 얻어서 확보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124) <http://www.taxeringskalendern.se>에서 1개 지역당 356크로나(한화 약 5만 2,655원) 결제 시 열람 가능

125)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헌법이 하나의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스웨덴의 헌법은 총 4개의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1974년 정부기구법(the 1974 Instrument of Government) ② 1810년 왕위계승법(the 1810 Act of Succession) ③ 1949년 출판자유법(the 1949 Freedom of the Press Act) ④ 1991년 표현자유법(the 1991 Fundamental Law on Freedom of Expression). 이동식,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법학논고』 제39집, 2012. 11., p. 292. 재인용

[그림 III-7] 스웨덴의 조세정보 공유사이트



Leveransuppgifter

Telefonnummer *

E-postadress *

Namn/Företagsnamn *

Adress *

Postnummer * Ort *

Land *

Sverige

Godkännande *

Jag godkänner Kalenderförlagets [kivillkor](#) och att ovanstående uppgifter lagras och behandlas i enlighet med gällande lagar och regler.

Dina val

Taxeringskalendern 2025
Utgåva: Uppsala län - SEK 356
Summa: 356 kr (inkl moms och porto inom Sverige)

Foregående Beställ

Utgåva *

Stockholms Stad
 Stockholms län Norra (exkl. Stockholms Stad)
 Stockholms län Södra (exkl. Stockholms Stad)
 Uppsala län
 Södermanlands län
 Östergötlands län
 Jonköpings, Kronobergs län
 Kalmar, Gotlands län
 Skåne län 1A
 Skåne län 1B
 Skåne län 2 (fd Kristianstads län och Blekinge län)

Hallands län
 Västra Götaland 1 (fd Coteborg, Bohus län)
 Västra Götaland 2 (fd Älvsborgs län)
 Västra Götaland 3 (fd Skaraborgs län)
 Värmlands län
 Örebro län
 Västmanlands län
 Dalarnas län
 Gävleborgs län
 Västernorrland, Jämtlands län
 Västerbottens län
 Norrbottens län

자료: 스웨덴 조세정보 공유사이트(taxeringskalendern), <http://www.taxeringskalendern.se>, 검색일자: 2025. 6. 26.

- (행정정보 통합) 스웨덴은 인구, 교육, 군복무, 고용, 기업, 의료 및 복지 등의 행정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각종 행정기관에서 수집하여 관리함
 - 스웨덴에서는 1968년부터 인구등록(Folkbokföringsregistret)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개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도입함
 - 국세청이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담당하고, 통계청이 수집된 자료를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가공하고, 다른 행정 데이터와 결합시켜 최종적인 총인구등록 데이터를 생성함
 - 1969년부터 1월 1일부터 매년 인구와 관련된 모든 개인 기록이 국세청의 인구등록 시스템으로 수집이 되고,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가 통계청으로 보내져서 통계청이 총인구등록(Registret över totalbefolkningen, TPR)¹²⁶⁾을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공하여 관리함

〈표 Ⅲ-6〉 스웨덴의 행정자료 생성 및 관리 흐름도

| 기관 | 국세청 | 통계청 | |
|------------------|---|---|----------------------------|
| 데이터 베이스 명칭 | 전국중앙인구등록 (Folkbokföringsregistret) 데이터베이스 | 총인구등록 (Registret över totalbefolkningen, TPR) 운용 데이터베이스 | 총인구등록 통계 데이터 베이스 |
| 역할 |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주중 5일 아침 인구등록데이 터를 통계청으로 전송 | 총인구등록 갱신(매일) 타 등록데이터 갱신 가공 데이터 | 인구 통계보관 서베이 데이터저장 |

자료: "Statistics Sweden(2017: 7)"; 신광영, 「스웨덴의 행정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제20호, 2017, p. 88. 재인용

126) Statistics Sweden, 2017 pp. 4~5.

IV. 개선방안

1. 과세정보 연계 및 공유

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신고의무

1) 국세의 원천세와 간이 지급명세서

- 원천세와 간이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살펴보면 요구하는 신고정보는 다르지만 비교를 통해 각 신고의 오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과 간이 지급명세서상 총지급액의 합계는 일치해야 함

-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은 소득 종류별로 제출정보에 차이가 있음
 - 근로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급여 및 인정상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소득'과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사업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업종코드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신규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는 서식 개정을 통해 시기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¹²⁷⁾
 - 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구분,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127)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2. 6. 10.

〈표 IV-1〉 소득종류별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정보

| 구분 |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정보 ¹⁾ |
|------|---|
| 근로소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여부, 비거주자 여부, 퇴사일, 근무기간, 급여 등, 인정상여 |
| 사업소득 | 업종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여부, 지급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
| 기타소득 | 소득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여부, 지급건수, 지급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

주: 1)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함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4서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함
 - 이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로 완전한 소득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2026년 1월 1일부터¹²⁸⁾ 적용될 근로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 서식을 살펴보면 ‘근무기간’과 ‘퇴사일’ 항목이 추가됨¹²⁹⁾

〔그림 IV-1〕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 전·후 비교

| 현행 서식 | | | | | | | | |
|----------------------|-------------|-------------|--------------------------|----------------------------|-----------|-----------|-----------|-----------|
|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 | | | | | | | |
| 일련 번호 | ⑫ 주민등록번호 | ⑭ 내·외국인 | ⑮ 근무 기간 | ⑰ 지급월 | ⑱ 급여 등 | ⑲ 인정상여 | | |
| | ⑬ 성명 | ⑯ 거주자구분 | | 1월/7월 | | | | |
| 개정서식(2026년 1월 1일부터) | | | | | | | | |
|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 | | | | | | | |
| 일련 번호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⑩ 외국인 여부 (외국인 '○') | ⑪ 비거주자 여부 (비거주자 '○') | ⑫ 퇴사일 | ⑬ 근무기간 | ⑭ 급여 등 | ⑮ 인정상여 |
| 1 | | | | | | | | |
| 2 | | | | | | | | |

자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128) 단 기획재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2026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고자 함
 129) 근무기간과 퇴사일은 월일로 기재함(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무 후 1월 21일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은 01.01.~01.20.이고 퇴사일은 01.21.임)

-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총지급액'을, 간이 지급명세서로 '총급여액'을 보고하는데 이 집계금액은 비과세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함
 -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는 포함되지만 간이 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총급여액=간이 지급명세서상(급여 등+인정상여)
 - 총지급액=총급여액+비과세소득

- 원천세와 간이 지급명세서의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간이 지급명세서의 서식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로 원천세 신고를 면제할 수 있음
 - 서식 보완을 통해 소득별 지급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비교할 수 있음
 - (지급금액) 신고 즉시 서식별 지급금액의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세 등과 연간 지급 명세서상의 기납부세액과 연동하여 비교할 수 있음

2) 국세의 원천세와 지방세의 주민세 종업원분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방세의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매월 판단해야 함
 - 과세 월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가 없음

-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단위별로 납세의무를 판단하므로 현행 제도 내에서 원천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원천세의 납세지와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다를 수 있음
 - 원천세의 납세지는 개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이고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임
 -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사업소 단위로 판단하고 사업소는 원천세의 사업장과 다를 수 있음

- 동일한 건물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더라도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판단 시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경우가 있음
- 관할 외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의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지방세의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 과세권을 가져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 판단 시 사용되는 정보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세 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를 안내하는 세정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매월 납세의무를 판단하여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목임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자진신고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 연동 서비스가 없어 납세자의 납세 의식이 부족한 편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 안내메시지나 신고사이트 접속정보 등을 제공하면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신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3) 국세의 간이 지급명세서와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신고 등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연간 소득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총액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용 근로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서를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¹³⁰⁾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월별로 수집되는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자격취득, 소득변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서식을 살펴보면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는데, 이 정보는 4대 보험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과 관련한 신고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신고된 소득월액(기준소득 또는 보수월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 공단별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간이 지급명세서의 소득정보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율(20%)¹³¹⁾ 이상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 신청할 수 있음¹³²⁾
 - 건강보험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 신고해야 함¹³³⁾
 -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소득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 분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함¹³⁴⁾

130) 의안정보시스템, 「[22077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 1. 2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O4M1N2L2J6K1S4S3Q0R3Q9Q6O0P7, 검색일자: 2025. 7. 29.

1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보도자료, 2023. 3. 22.

13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1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134)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p. 52.

4) 국세의 간이 지급명세서와 근로기준법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간이 지급명세서의 신고정보를 포괄하고 있음
 - 임금명세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등이 기재된 문서로, 이를 기반으로 간이 지급명세서가 작성되므로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자료로 임금명세서가 필요함
 -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서의 항목은 임금명세서의 항목에 비해 단순함
- 간이 지급명세서의 정보를 소득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소득내역확인’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임금명세서 교부로 간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자는 국세청의 소득내역확인을 통해 본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착오, 누락 등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임금명세서의 교부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보장됨
 - 원천징수의무자는 임금명세서의 기초 자료로 볼 수 있는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함
 - 소득자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나. 소득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앞서 제안한 과세정보의 연계 및 공유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가 전제되어야 함

- 소득정보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소득정보를 연계 및 공유하여 활용하는 행정 전반에서 오류가 발생해 행정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소득정보의 오류에 대해 세무당국(HMRC), 고용주, 소득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어 소득정보의 오류를 빠르게 시정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자가 소득정보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나 소득자가 데이터를 정정할 수는 없음
 - 영국은 소득자의 소득정보를 세무당국(HMRC), 고용주, 소득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의신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RTI 분쟁팀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팀은 고용주와 소득자 간의 데이터 불일치, 누락, 중복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 및 조정함
 - 우리나라는 홈택스의 '소득내역확인' 메뉴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정보를 소득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은 확인되지 않음
- 소득정보의 오류를 빠르게 정정하기 위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인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득자가 직접 데이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 수집 단계에서 자동 검증 알고리즘 도입, 오류 탐지 및 경고 시스템
 - 전담 조직을 통한 분쟁 대응 체계
- 다만 소득정보의 연계 및 공유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다른 출처에서 유입되는 데이터 간 교차 검증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공유와 연계보다는 납세자의 협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소득정보의 연계 및 공유로 인해 상호 대조가 가능한 체계가 사라지므로 정보 오류 탐지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의 과세정보뿐 아니라 사회보험공단이 수집하는 소득정보를 함께 활용하고 있음

2. 행정시스템 개선

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시스템 통합

- 2025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세입시스템은 2005년 구축 이후 2024년, 전면 개편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공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납세자를 위한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무행정시스템’을 새로 개편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세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위택스와 세무행정시스템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음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201개 시·군·구를 통합함
 - 서울시는 자체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고¹³⁵⁾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조 진단 및 개선 조치 계획을 발표함¹³⁶⁾
 - 납부서비스, 증명서 발급 등 납세자의 일상적인 이용서비스에서 발생한 오류로 많은 민원이 제기됨

135) 『한경』,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에 공무원 불만 폭주…“욕받이로 전락”」, 2024. 3. 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307720Y>, 검색일자: 2025. 7. 17.

136)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2024. 2. 22.

- 위택스 접속 불가 등 납부나 조회가 안 되는 사례
 - 납부 후 수납확인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부 증빙이 어려워졌다는 사례
 - 일부 비영리 법인 등은 새 시스템에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례
 - 오류에 대한 각 지자체의 대응체계가 부족함
 - 시스템 이상으로 납세자들이 주민센터나 세무서 창구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창구 대기줄이 길어져 업무 지연이 심하다는 불만이 많아짐
 - 도입 초기 26만건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콜센터 문의 건수가 급증함
 -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2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 외부 전문가 진단 참여, 구조 진단팀 투입 등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아키텍처나 데이터베이스 구조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계획을 추진
 - 오류 영향으로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감면 안내, 전담대응반 및 콜센터 운영 등 민원 대응 방안 제시
 -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장애 시 대체 사이트 확보 등의 조치도 병행
 - 개통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오류가 지속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¹³⁷⁾
 - 행정안전부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장애 또는 오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 사업 수행사와 발주처 간 갈등으로 소송전으로 이어짐
 - 이러한 오류로 납세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도 늦어져 2차적인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던 납세자 정보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음
- 각종 코드, 기준 정보를 표준화시킴으로써 전국 지방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됨

137) 『연합뉴스』, 「차세대시스템 개통 1년 넘었는데…납세철마다 오류 ‘부글부글」, 2025. 6. 15.,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4039800530>, 검색일자: 2025. 7. 17.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적 운영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입시스템은 통합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운영 인력의 수급 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시스템 운영 인력이 부족하므로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중앙 단위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분석하여 반복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대응 체계 또는 민원 처리의 자동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시스템 초기 단계인 현재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책임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사업자 간 운영주체, 유지보수, 기술지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한 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시스템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협의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면 납세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행정 효율성 및 데이터 관리 일관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관리체계가 통합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방세 관련 납세협력과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제도 국세의 홈택스처럼 하나의 창구를 통해 신고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납세지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지방세는 세목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목별로 관할 납세지를 판단해야 하고 관할이 아닌 곳에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위택스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시스템 간 연계 환경이 조성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판단 오류를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임

나. 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함¹³⁸⁾¹³⁹⁾
 - (행정 운영) 정부 측면에서는 행정 프로세스를 디지털 중심으로 설계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플랫폼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에는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내·외부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공유해야 할 데이터를 일일이 등록해야 했으나,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표준 기준으로 데이터를 생성·관리·공유하여 데이터를 연계
 - (공공서비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5대¹⁴⁰⁾의 시스템을 통합한 하나의 창구를 구축하여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 등과 같이 이곳저곳 별도로 접속할 필요 없이 통합플랫폼에서 하나의 ID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증명서 발급, 세금신고, 복지신청 등)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계획
 - 플랫폼은 1단계 인터넷망 구축 → 2단계 업무망 구축 → 3단계 기능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를 구축될 예정임
- 데이터 통합플랫폼은 2025년 7월 현재, 초기 단계로 1단계 구축을 점검하였고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정식 개시될 예정임¹⁴¹⁾

138)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개방까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만든다.」, 2024. 10. 28.

139)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본원칙」, <http://dpg.go.kr/DPG/contents/DPG01010000.do>, 검색일자: 2025. 7. 29.

140) 국세청 홈택스, 고용부의 고용24, 고용부 나이스, 복지부 복지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14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DPG통합플랫폼(DPG허브) 구현으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보도자료, 2025. 5. 30.

- 1단계 구축은 주로 시스템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수행됨
 - 실제 응용 서비스(보이스피싱 대응, 정부지원 알리미 등)를 시범 제공하여 플랫폼의 가능성을 테스트함
 - 향후 2단계에서 정부 업무망 연계, 보완 기능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음
- 현재 개발 중인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관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면 기관 간 소득정보의 실시간 검증과 행정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급명세서 정보를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사회보험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국세청의 지급명세서 과세자료 중심의 표준화된 코드로 통일
 - 과세자료 공유·연계를 위한 법령 정비

3.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절차

가. 과세정보의 정의 및 공유 절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의무와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정보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의미함
 -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과세정보는 법적 근거와 명시된 행정 목적이 있을 경우 공유 가능하며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표 IV-2〉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 과세정보 요구 기관 | 사용 목적 | 비고 |
|---------------|------------------------|--------------|
| 국가행정기관·지자체 |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 조세행정 |
| 국가기관 |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 사법적 |
| 법원 |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요구 | 사법부 판단 |
| 세무공무원 | 국세 부과·징수·조사 필요 | 국세청 내부 공유 |
| 통계청장 | 국가통계 작성 | 통계 |
| 사회보험기관 | 사회보험 운영 |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 급부·지원 자격 조사(당사자 동의 필요) | 복지행정 |
| 국정조사위원회 | 국정조사 목적(비공개회의 한정) | 입법 |
| 기타 법률에 따른 요구 | 개별법 근거 | 포괄 조항 |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기관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함
 - 과세정보 제공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임
 - 과세정보 요청 문서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 제공받고자 하는 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음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나 담당자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2019년 신설된 조항은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문화하였음¹⁴²⁾
 - 제공받은 기관은 암호화·접근통제 등 과세정보의 보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14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6항

- 반면 과세정보 중 소득정보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임¹⁴³⁾
 - 행정정보란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무상 작성·취득·관리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말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
 -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범위는 개인의 신원, 법인 등의 법적 지위, 자격증명, 권리관계, 물건의 위치 및 가치, 행위증명, 통계 및 정책정보 등 7유형으로 구분됨
 - 개인의 신원이나 행위에 관한 정보 등 일부 항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의 예외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동이용이 허용됨
 -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로 지정된 항목은 비밀 유지의무에 저촉되지 않고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¹⁴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가 「전자정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동 정보를 신청기관에 행정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봄
 - 과세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로는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고 대부분 민원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납세정보임¹⁴⁵⁾
 - 현재 소득정보는 공동이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43) 「전자정부법」 제2조

144) 「전자정부법」 제40조

14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https://www.share.go.kr/fa/fa010/newFa/infoPlace/nonTakeDocumentBunya.jsp>, 검색일자: 2025. 7. 29.

- 또한 과세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어 과세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는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경제적인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수집한 과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¹⁴⁶⁾
 - 국세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특정한 경우¹⁴⁷⁾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¹⁴⁸⁾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164조¹⁴⁹⁾ 및 제173조¹⁵⁰⁾에 따른 소득금액 정보는 「고용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사회보험 운영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수시로 제공되고 있음

146) 위찬필, 「과세정보 활용과 비밀유지 의무와의 조화방안」, 국세청, 2019. 11., p. 12.

147)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8) 국세청 지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제2조

149) 지급명세서 제출

15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표 Ⅳ-3〉 소득금액을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

| 법적 근거 | 목적 | 과세정보 항목 |
|--------------------------------------|-----------------|-------------------------------------|
| 「고용보험법」 제110조 | 사회보험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 공공주택 신청자격 검증 |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소득금액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 | 몰수·추징 |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부동산취득내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국가유공자 예우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 급여지원 심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 | 구상권 행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
| 「기초연금법」 제11조 | 기초연금 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소득금액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민 해당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소득금액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독립유공자 예우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실태조사 등 |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소득금액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몰수, 추징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출액, 부동산취득내역, 소득금액 |
| 「병역법」 제77조의4 | 공직자 등 병적 관리 |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 수급자격의 조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장려금 지급내역 |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 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 운영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장려금 지급내역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 급여요구 조사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장려금 지급내역 |
|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 구상권 행사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양육비채무자의 지급능력조사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일, 소득금액 |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 손해배상청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체납액 |

〈표 IV-3〉의 계속

| 법적 근거 | 목적 | 과세정보 항목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1조 | 장애인 고용 촉진 |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 복구비 등 지급 대상자 검토 |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
| 「주택도시시기금법」 제33조 | 실태조사 등 |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득금액, 사업자등록번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소득금액, 주식변동내역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7조 | 부실채권 보전·추심 |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소득금액 |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채무조정 (구상권행사 제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 급부지원심사 | 주민등록번호, 근로장려금 지급액, 소득금액 |

자료: 국세청, 「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www.hometax.go.kr/html/pp/private/private.html?#section_02

나. 법령 정비의 필요성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정보 공유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체계는 디지털 세무행정 환경에서 실시간 데이터 연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현행 체계는 과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는 유효하나 지방세, 사회보험, 복지 등 공공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함
 - 과세정보는 요청→심사→제공의 단계를 거쳐 공유되고 이러한 절차적 방식은 디지털 세무행정 환경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데이터 연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움
 - 국세의 과세정보를 실시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세정보 연계를 뒷받침할 관련 개별법과의 연계성도 미흡함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정보의

- 기관 간 데이터 교환은 일회적 요청과 승인 절차에 의존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기관 등과의 소득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3 제1항의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게 된다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활용될 수 있음
 - 이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음

 - 반면 국세청은 국세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소득금액 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¹⁵¹⁾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음¹⁵²⁾

 - 따라서 소득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의 정보제공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보다는 개별 법률을 통해 연계 및 공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예외 사유를 확대할 경우, 과세정보 보호 원칙이 약화되고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이 우려됨
 -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고 예외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제공을 허용하는 구조임
 - 사회보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소득정보 연계는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연계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공 정보의 항목·방법·보안조치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151) 「고용보험법」 제110조

15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 이러한 접근은 각 기관의 법정사무 범위 내에서 정보 이용을 정당화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행정 효율성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소결

- 본 장에서는 현행 소득파악 제도하에서 ① 유사한 신고의무의 연계 및 공유방안 ② 행정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함
- (신고의무 연계 및 공유) 국세의 과세정보인 원천세 신고자료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정보를 연계 및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동일한 소득정보를 토대로 이행되는 유사한 신고의무를 연계 및 공유
 - (원천세와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현행 서식만으로도 정보 연계가 가능하나,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세부 항목이 미비하여 서식 보완 필요
 - (원천세와 주민세 종업원분) 원천세 신고자료를 통해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를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사전 안내하는 세정 지원 도입
 - (간이 지급명세서와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간이 지급명세서의 소득정보를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의 공통 신고인 자격취득상실, 소득 변동 등의 신고의무를 면제
 - (간이 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국세청의 ‘소득내역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득자는 본인의 소득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내역확인’ 서비스의 활용도와 이용률을 높여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시 임금명세서 교부로 간주
 - 동일한 소득정보로 다양한 의무를 연계 및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정확성이 중요하므로 정보수집 단계에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소득자가 직접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수집 단계에서의 자동 검증

- 또는 오류 탐지 알고리즘 구축, 소득정보 오류를 처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등 고려 가능
- 소득정보의 연계 및 공유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다른 출처에서 유입되는 데이터와의 교차 검증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에는 유의할 필요
- (행정시스템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시스템 통합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을 제안함
 - 2024년 전면 개편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시스템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지방세는 세목별·사업소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상이할 수 있는바,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목별·사업소별 관할 납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할이 아닌 곳에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됨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위택스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행정시스템 간 연계 환경이 조성되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판단 오류가 시의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다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판단 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 현재 개발 중인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V. 결론

- 본 연구는 현행 소득과약 제도하에서 관계기관 간 소득정보 연계와 공유를 위한 행정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2025년 7월 현재 국내의 소득과약 제도의 신고 체계와 관련 행정시스템 현황을 검토하고 영국,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주요 해외사례를 조사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법 외에도 「지방세법」, 「사회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신고의무 현황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핵심 데이터 항목을 살펴보고 신고 체계 간의 연계 가능성과 신고정보 간의 공유 가능한 항목을 검토
 -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별 행정시스템 현황을 검토 및 비교함
 - 조세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국가인 영국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와 비교하고 과세 관청이 과세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도 함께 소개함
- 우리나라의 현황과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 내에서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신고의무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신고의무) 서식 보안을 통해 원천세와 간이 지급명세서 연계, 원천세 신고정보를 활용한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 안내, 간이 지급명세서 정보로 사회보험의 공통신고인 자격취득상실 등 신고의무 면제,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로 임금명세서 교부 간주

- (행정시스템 개선) 차세대 세입시스템 안정화 후 지방세 신고 시 납세지 착오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관계기관 간 소득정보 연계
- 제안한 개선방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국세기본법」의 정보제공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보다 개별 법령을 통해 연계 및 공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법령 체계는 과세정보 보호에는 적합하나 공공서비스 간 데이터 연계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함
 - 반면 국세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제3자에게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73조에 따른 소득금액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세무행정 연구 특성상 조세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보다 실질적인 세무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전히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신고의무를 제안했으나 연계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서식 등과 해당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편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지는 못함
 - 실시간 소득자료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해 개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 이 외에도 본 연구가 제안한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바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보완되기를 기대함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고용노동부,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2025. 7. 7.
- 국민연금공단, 「2025년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100% 활용하기」, 2024. 10.
- _____,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장으로 통합 발급」, 2011. 8. 1.
- 국세청,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 _____, 『2020 원천세 신고안내』, 2020.
- _____, 『2024 실시간 소득과약 해설』, 2024. 1.
-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3. 11. 30.
- _____, 「2025년 세제개편안」, 2025. 7. 31.
- 김나리·최영준·김지현, 「더 효율적인 빈곤정책의 역설: 영국의 통합부조와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3권 제2호, 2023. 6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DPG통합플랫폼(DPG허브) 구현으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보도자료, 2025. 5. 30.
- 류영아,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2권 제4호(통권112), 2020. 12., pp. 103~125.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 체결」, 보도자료, 2009. 6. 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4. 9. 26.
- 시송(Xi Song)·토머스콜먼(Thomas S. Coleman), 「미국의 사회과학 및 정책 연구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가을호 Vol.14, 2020. 9.,

pp. 5~15.

신광영, 「스웨덴의 행정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제20호, 2017. 1.

『연합뉴스』, 「차세대시스템 개통 1년 넘었는데…납세철마다 오류 ‘부글부글」, 2025. 6. 15.

위찬필, 『과세정보 활용과 비밀유지 의무와의 조화방안』, 국세청 연구보고서, 2019. 11.

윤지영·최세영,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업무가이드』, 2023. 5.

의안정보시스템, 「[220770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 1. 22.

이동식,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법학논고』 제39집, 2012. 11.

최창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예외규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12.

_____, 「미국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조(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제68권 제3호, 2019, pp. 478~510.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서울시 지방세도 신고·납부 가능 !」, 보도자료, 2009. 12. 4.

_____,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4. 2. 22.

_____, 「범정부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개방까지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만든다」, 보도자료, 2024. 10. 28.

EY, “Worldwide Doing Payroll Guide 2024,” 2024. 1. 26.

TAXVOL(TAX HELP FOR OLDER PEOPLE), “Accessing your Personal Tax Account : step by step instructions,” 2018. 6. 1.

2. 법령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사회보장기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정부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일본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시행규정」

일본 「소득세법」

3. 판례 및 결정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66

조세심판원 2023지4012(2023. 11. 24.)

4. 웹사이트

-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ontoincha>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http://dpg.go.kr>
- 마이너포털API, <https://myna.go.jp/html/api/tetsuzukishinsei/index.html>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 한경, <https://www.hankyung.com>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https://www.share.go.kr/fa/fa010/newFa/infoPlace/nonTakeDocumentBunya.jsp>
- NSP통신, <https://www.nspna.com>
- ATT, <https://www.att.org.uk/employers/welcome-employer-focus/brief-history-pay>
- Constitution of Schweden, www.schweden.gov.se
- e-Tax, <https://www.e-tax.nta.go.jp>
- HMRC, <https://www.gov.uk>
- IBFD, <https://www.ibfd.org>
- IRS, <https://www.irs.gov>
- Japan Pension Service, <https://www.nenkin.go.jp>
- Ministry of Justice, <http://www.riksdagen.se>

NTA, <https://www.nta.go.jp>

REVENUEBENEFITS, <https://revenuebenefits.org.uk>

Taxeringskalendern, <http://www.taxeringskalendern.se>

マイナポータルAPI 仕様公開サイト, <https://myna.go.jp>

세정연구 25-02

소득파악 제도의 행정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발 행 2025년 9월 30일

저 자 최인혁·권정교·문교현

발행인 이 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5

ISBN 979-11-6655-377-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